|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원 국가 환경보호 “제12차 5개년” 규획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국발[2011]4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및 각 직속기구:  <국가 환경보호 “제12차 5개년” 규획>을 인쇄배포 하는 바, 성실히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2011년 12월 15일  **국가환경보호 “제12차 5개년” 규획**  환경보호는 중국의 기본 국가정책이다.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에 환경보호 사업의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고,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건설 가속화를 위하여 본 규획을 제정한다.  **1. 환경추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환경보호 업무를 매우 중시한다. 이 업무를 과학발전관 이행의 주요내용,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주요수단 및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근본적 조치로 삼는다. “제11차 5개년” 규획기간에 국가는 주요 오염물질 총배출량의 현저한 감소를 경제 사회발전의 구속성 지표로 삼아, 부각된 환경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였다. 인식, 정책, 체제와 능력 등 방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이산화황(SO₂) 총배출량은 2005년 대비 각각 12.45% 및 14.29% 감소하여 배출량 감축 임무를 초과 완수하였다. 각 지역의 오염관리 시설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도시 하수처리율이 2005년 52%에서 72%로 향상되었다. 화력발전 탈황기 설치 비중은 12%에서 82.6%로 개선되었다. 전면적인 하천 및 호수의 휴양회복을 전면 추진하고, 주요 유역 및 지역의 오염 예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환경 품질이 다소 개선되었다. 국가가 통제하는 전국 지표수(地表水) 단면 수질을 Ⅲ급 보다 우수한 비중을 51.9%까지 향상시켰다. 전국 도시 공기 이산화황의 평균농도는 26.3% 감소하였다. 환경 법률집행 감독정도를 끊임없이 확대시켜, 농촌 환경의 종합관리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생태환경보호가 현실적으로 강화되었고, 핵과 방사능안전의 통제가 가능해졌다. 전 사회 환경의식이 끊임없이 증강되어 대중의 참여와 정도가 진일보 향상되었다. “제11차 5개년” 규획의 환경보호 목표 및 중점 임무는 대대적으로 완수하였다.  현재 중국의 환경상태가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는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억제되지 못하여 환경모순이 부각되고 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일부 중점 유역, 해역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일부 지역과 도시의 대기 중 안개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많은 지역의 주요 오염물 배출량이 환경용량을 초과한다. 농촌 환경오염이 악화되어, 중금속, 화학품, 영구성 유기 오염물 및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생태 파괴가 심각해져 생태시스템 기능이 퇴화하며 생태환경이 비교적 취약하다. 핵과 방사능 안전 위험이 증가한다. 대중의 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가고, 돌발적인 환경사건 발생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미 인체의 건강, 공공의 안전 및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생물 다양성 보호 등 전 세계 환경 문제의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환경보호 법률제도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았으며, 투자 또한 여전히 부족하다. 법률 집행 역량이 취약하며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인구 총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업화,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에너지소비 총량이 지속적인 증가한다. 또한 오염물 발생량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구속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2. 사상, 기본원칙 및 주요목표 지도**  (1) 사상지도  등소평(邓小平)이론과 3개대표(三个代表)의 주요사상을 지도로 삼아 과학발전관 실현을 심층적으로 시행하며, 생태문명 수준을 제고하는데 힘쓴다. 현실적 해결 과학발전과 대중을 해치는 것에 대한 부각된 환경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며, 체제 메커니즘의 혁신과 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주요 오염물 총량의 배출감축을 심화시키고, 환경의 품질개선에 힘을 기울인다. 환경위험을 방비하고 환경보호 역사성 전환을 전면 추진하여 저비용, 효익 증대, 배출 감소 및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의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 사회 건설을 가속화 한다.  (2) 기본원칙  과학을 발전시키고, 보호를 강화한다. 과학발전을 견지하고,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가속화한다. 자원의 환경 지지력을 기초로 삼아, “환경보호 중의 발전, 발전 중의 환경보호(在保护中发展，在发展中保护)”를 견지하며 경제사회와 자원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킨다.  환경을 보호하여 국민에 혜택을 제공하고, 협조를 촉진한다. 국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안전한 음식물을 먹는 것 등을 바탕으로 더욱 뚜렷한 전략을 견지하여 민생과 관련된 부각된 환경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한다. 환경보호의 기본 공공서비스의 평균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대중의 환경권익을 유지 보호하며, 사회의 조화 및 안정을 촉진한다.  예방을 위주로 하여 예방과 치료를 결합한다. 근원지부터 예방하고, 환경보호를 규획, 건설, 생산, 유통, 소비의 각 일환에 일관시키는 것을 견지한다. 환경오염을 다스리고 설비건설과 운행 수준을 제고시켜 생태보호와 복원을 강화한다.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난관을 극복한다.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환경문제의 해결 및 중점 유역, 지역, 업종의 환경문제를 상호 결합 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견지한다. 국가 정서와 호응하는 환경보호전략체계, 전면적 고효율의 오염 예방체계, 건전한 환경 품질 평가체계, 완벽한 환경보호법 규정 정책과 과학기술표준체계, 완비된 환경관리와 법률 집행 감독체계 및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행동체계를 구축한다.  지도를 분류하고, 등급을 나누어 관리한다.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실시하는 차별된 환경정책을 견지한다. 조건이 있는 지역은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 조치를 채택한다. 국가감찰, 지방감독, 단위 책임의 환경감독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보호 목표책임제를 이행한다.  정부가 지도하고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업주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부문의 협조를 강화한다. 환경정보공개와 여론감독을 강화하여 환경보호에 전 사회 참여를 동원한다. 시장화 수단을 통한 환경보호 추진을 모색한다.  (3) 주요 목표  2015년까지 주요 오염물 총배출량을 뚜렷하게 감축시킨다. 도시와 농촌의 음용수 수원지 환경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수질을 대폭 개선시킨다. 중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영구성 유기 오염물, 위험 화학품, 위험 폐기물 등 오염 예방 효과를 분명하게 한다. 도시 환경 기초시설 건설과 운용수준을 향상시킨다. 생태환경 악화 추세를 전환시킨다. 핵과 방사능안전감독 능력을 확실하게 증강시키고, 핵과 방사능안전 수준을 진일보 제고한다. 환경감독체계를 완벽하게 한다.   |  |  |  |  |  | | --- | --- | --- | --- | --- | | **특별란1 : “제12차 5개년” 환경보호 주요 지표** | | | | | | No. | 지 표 | 2010년 | 2015년 | 2010년 대비 2015년 성장 | | 1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배출량(만 톤) | 2,551.7 | 2,347.6 | -8% | | 2 | 암모니아질소 총배출량(만 톤) | 264.4 | 238.0 | -10% | | 3 | 이산화황(SO₂) 총배출량(만 톤) | 2,267.8 | 2,086.4 | -8% | | 4 | 질소산화물 총배출량(만 톤) | 2,273.6 | 2,046.2 | -10% | | 5 | 국가통제의 지표수 단면의 열등 V급 수질 비율(%) | 17.7 | ＜15 | -2.7% | | 국가통제의 7대 수계 단면수질 Ⅲ급 이상 비율(%) | 55 | ＞60 | 5% | | 6 | 지급(地级) 이상 도시 공기품질의 2급 표준이상 달성한 비율(%) | 72 | ≥80 | 8% |   주) ①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암모니아질소 총배출량은 공업 및 도시생활과 농업원 총배출량을 포함한 것으로, 2010년 오염원 조사동태 갱신결과에 근거하여 사정한 것이다.  ②“제12차 5개년”기간에 국가 통제의 지표수 단면개수는 759개에서 970로 증가하였고 그 중 국가 통제의 7대 수계 단면 개수는 419개에서 574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평가인자는 12항목에서 21항목으로 늘렸다. 본 측량에 따라, 2010년 전국 국가 통제의 지표수 단면 열등 V급 수질비율은 17.7% 이며, 국가 통제의 7대 수계 단면수질 Ⅲ등급 수질 이상의 비율은 55%이다.  ③“제12차 5개년”기간에 공기 환경 품질평가 범위는 113개 중점 도시에서 전국 지급(地级) 이상 도시 333개로 증가하였다. 흡입가능 과립물,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의 연 평균 가치 추산에 따라 2010년 지급(地级) 이상 도시의 공기 품질은 2급 표준이상의 비율이 72%에 도달하였다.  **3. 주요 오염물 배출 추진**  (1)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한다.  낙후한 생산능력 도태를 가속화한다.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 <일부 공업 업종의 도태된 낙후한 생산작업 설비 및 제품 지도목록>을 엄격히 시행한다. 철강, 유색, 건축자재, 화공, 전력, 석탄, 제지, 염색, 제혁 등 업종의 낙후한 생산능력의 도태 역량을 강화한다. 연간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임무를 지방, 기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도태된 낙후 생산능력의 기업명단을 사회에 공고한다. 신규 프로젝트와 오염배출 감축, 낙후 생산능력의 도태가 상호 연결되는 심사 비준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능력 등량 또는 감량치환제도를 시행한다. 중점 업종의 신축, 증축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심사비준은 주요 오염물 총배출량 지표를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신규 증가한 오염물 배출량 축소에 힘을 쏟는다. 에너지 소비 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비석화 에너지(태양열,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발전을 촉진시켜 2015년까지 비석화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1.4%에 이르도록 한다. 석탄 세정선별 및 가공 수준을 제고한다. 천연가스, 탄층가스 공급을 증가하여 석탄이 1차 에너지 소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한다. 공동으로 예방 통제하는 중점 구역에서 석탄소비 총량 통제 시범지역을 전개한다. 에너지 다소비, 고배출 및 생산능력 과잉 업종의 진입장벽을 제고한다. 단위 제품의 오염물 생산강도 평가제도 구축을 모색한다.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전략성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에너지 절약형 및 환경보호형 교통운수 방식의 발전을 독려한다.  청정한 생산과 발전의 순환경제를 적극 추진한다. 제지, 염색, 화공, 야금, 건축자재, 유색, 제혁 등 업종의 오염물 배출 표준과 청정생산 평가지표를 제고하며, 각 지역에 더욱 엄격한 오염물 배출 표준 제정을 독려한다. 오염물 배출 허가증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농업, 공업, 건축, 무역거래 서비스 등 분야에서 청정생산의 시범을 추진한다. 순환경제 시범지역을 심화시켜, 자원재생을 이용하는 산업화를 가속화 한다. 생산, 유통, 소비의 각 일환의 순환경제 발전을 추진하며, 전 사회를 아우르는 자원순환 이용체계를 구축한다.  (2)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암모니아질소 배출량 감축에 힘쓴다.  중점 지역과 업종의 수질 오염물 배출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이미 부영양화된 호수의 저수지와 동해(东海), 발해(渤海) 등 적조현상이 쉽게 발생하는 연해지역에서 총 질소 또는 총 인의 총배출량 통제를 실시한다. 중금속 오염의 종합예방 중점 지역에서 중점 중금속 오염물 총배출량 통제를 실시한다. 제조, 염색, 화공 등 업종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암모니아질소 총배출량 통제를 추진하며 감축비율을 2010년 대비 10% 이상으로 한다.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등 지역에서 제조, 염색, 제혁, 농약, 질소비료 등 업종의 단순히 생산능력을 증대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한다. 중점 유역 하천 근원지에서 유색, 제지, 염색, 화공, 제혁 등 프로젝트의 신축을 금지한다.  도시의 오수처리 수준을 제고한다. 오수관 네트워크 건설 역량을 강화하여 비와 구정물을 구분하는 개조 작업을 추진한다. 현성(县城) 및 중점 편제된 진(镇)에서 오수처리공장 건설을 가속화한다. 2015년까지 전국에 도시 오수관 네트워크를 약 16만Km신설하고, 일일 오수 처리능력을 4,200만 톤으로 신규 확대시켜 모든 현과 중점 편제된 진의 오수처리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오수 처리시설 부하율을 80% 이상으로 제고하고, 도시의 오수 처리율 85%에 이르도록 한다. 오수 슬러지의 무해화 처리 및 오수의 재생 이용을 추진한다. 오수처리 시설운용 및 오염물 감축 평가심사를 강화하여 도시의 오수처리 공장의 감시통제 플랫폼 건설을 추진한다. 전지(滇池), 소호(巢湖), 태후(太湖) 등 중점 유역 및 연해지역의 도시 오수처리 공장은 A2/O(Anaerobic-Anoxic-Oxic)수준을 제고한다.  가축 및 조류 양식 오염 예방의 규모화를 추진한다. 양식장 구성을 최적화하고, 양식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양식 방식을 개선하여, 청정 양식 및 양식 폐기물의 자원화 이용을 추진한다. 가축 및 조류 양식업의 오염물 배출 표준을 엄격히 시행하여 양식 소구(小区), 분산양식 밀집지역의 오염물에 대해 통일된 수거와 정비를 시행한다. 2015년까지 전국의 규모화된 가축 및 조류 양식장과 양식소구 부대건설의 고체 폐기물과 오수 저장 처리 시설의 비율을 50% 이상에 도달한다.  (3)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전력업종의 오염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축하는 석탄기조는 탈황 탈질소 시설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탈황시설을 미설치한 기존의 석탄 기조는 도태시키거나 또는 탈황시설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고, 연기탈황(烟气脱硫)시설은 규정에 따라 연기 배출로를 제거해야 한다. 석탄기조의 낙후된 질소연소 기술 개조 및 연기탈질소(烟气脱硝)시설 건설을 가속화 한다. 단기 용량 30만 KW이상(포함)의 석탄기조는 전부 탈황시설을 추가 장착해야 한다. 탈황 탈질소 시설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배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한 내 개조해야 한다.  기타 업종의 탈황 탈질소의 보조를 강화한다. 철강 업종의 이산화황 총배출량 통제를 추진하고, 소결기의 연기탈황을 전면 시행하며, 신축하는 소결기는 탈황 탈질소 시설의 부대건설을 해야 한다. 시멘트, 석유/석유화학, 석탄화공 등 업종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한다. 석유/석유화학, 유색, 건축자재 등 업종의 공업용 가마는 탈황 개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신형 건식공정 시멘트 가마는 저질소 연소기술 개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신축하는 시멘트 생산라인은 효율 60% 이상의 탈질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지역에 맞게 석탄 보일러 연소 관리를 전개하고, 신축하는 석탄 보일러는 탈황 탈질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석탄 보일러는 연기탈황을 실시해야 **하며, 동부지역의 기존 석탄 보일러는 저질소 연소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동력 엔진 차량과 선박의 질소산화물 통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환경보호 표지관리를 실시한다. 구형 자동차, 기관차, 선박의 도태를 가속화하여 2015년까지 기본적으로 2005년 이전 등록하여 운영한 “황표차(黄标车)를 도태시킨다. 동력 엔진 차량의 환경 진입 요구를 제고하고, 생산의 일관성 있는 검사를 강화하며, 배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의 생산, 판매 및 등록을 금지한다. 신에너지 차량** 사용을 독려한다. 국가 제4단계의 동력 엔진 차량 배출표준을 전면 실시하고,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배출표준을 실시한다. 차량연료 품질을 개선시켜, 새로운 청정연료 사용을 독려한다. 전국 범위에서 제4단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차량용 연료를 공급한다. 도시의 대중교통을 적극 발전시키고, 특대형 및 대형 도시의 동력 엔진 차량의 보유 총량 조정을 모색한다.  **4. 부각된 환경문제의 현실적인 해결**  (1) 수질 환경 품질을 개선한다.  음용수 수원지를 엄격하게 보호한다. 도시 집중형 음용수 수원 보호구역의 심사업무를 전면 완수한다. 수원 보호구역 내 프로젝트 및 오수배출구 건설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수원지 환경 복구, 회복 및 규범화 건설을 추진한다. 수원 보호구역 외 배수구역의 유독 유해물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지(地)급 이상의 도시 집중형 음용수 수원지는 전체 수질분석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음용수 수원 환경 정보 공개제도를 구축하여 위험 방비 및 응급 예비경보를 강화한다.  중점 유역 수질오염의 예방을 심화시킨다. 각 중점 유역의 우선 통제 단원을 명확하게 하여, 구역을 나누어 통제를 실행한다. 회하(淮河)유역은 암모니아질소 통제를 명확히 하며, 회하 간류 및 정주(郑州), 개봉(开封), 회북(淮北), 회남(淮南), 방부(蚌埠), 박주(亳州), 하택(菏泽), 제녕(济宁), 조장(枣庄), 림기(临沂), 서주(徐州) 등 도시의 수질오염 예방을 중점 추진하여 간류 수질이 기본적으로 Ⅲ급에 이르도록 한다. 바다와 하천 유역은 수자원 이용 및 수질오염 예방의 일괄적인 규획 수립을 강화해야 하며, 음용수의 안전보장, 도시 수질환경 개선, 경계를 뛰어넘은 수질오염 협력을 중점으로 오염 하중을 대폭 감소시키고, 열등 V급의 수질 단면 비중을 명확히 축소시킨다.  요하(辽河)유역은 도시 수계환경의 종합적인 복구를 강화해야 한다. 요하 보호구역 건설을 추진하여 요하 간류 및 초소대하(招苏台河), 조자하(条子河), 대요하(大辽河) 등 지류 수질의 뚜렷한 호전을 실현한다. 삼협(三峡)댐과 그 상류는 오염관리, 수질생태보호 및 수원보전을 강화해야 하며, 상류 및 댐의 수질보호의 우수함을 확보해야 한다. 송화강(松花江)유역은 도시 수계환경의 종합적인 복구 및 면원(面源)오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가 통제하는 단면 수질은 기본적으로 열등 Ⅴ급을 청산해야 한다. 황하(黄河) 중상류는 위하(渭河), 분하(汾河), 황수하(湟水河) 등 지류 수질오염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녕동(宁东), 악이다사(鄂尔多斯), 섬북(陕北) 등 에너지 화공기지의 환경 위험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하투(河套)관개 지역의 농업 면원오염 예방을 강화하고, 지류수질을 대폭 개선하여 간류의 안정이 사용기능 요구에 도달하도록 한다.  태호(太湖)유역은 호수에 들어오는 총 질소, 총 인 등 오염부하를 줄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호수 전체 수질이 열등 V 급에서 V급으로 향상시켜 부영양화 추세를 억제시킨다. 소호(巢湖)유역은 양식과 호수에 들어오는 오염 통제를 강화하고, 암모니아질소, 총 질소 및 총 인 오염부하를 감축한다. 호수구역의 생태 복구를 강화하고, 호수 전체의 부영양화 추세를 억제하여, 주요 호수진입 지류는 기본적으로 열등 V 급 수질을 청산한다. 전지(滇池)유역은 호수 전체, 생태방호구역, 이용안내구역 및 수원보존구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호수 진입 하류와 호수 전체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남수북조(南水北调, 수자원이 부족한 화북 지역으로 물을 끌어올려 물부족 현상을 극복하려는 규획) 중앙부분의 단강구(丹江口)댐 및 상류는 수질오염 방지와 수토유실관리를 강화하여 농업 면원 농업관리를 추진하고, 수질이 전면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을 실현한다. 동선수원구(东线水源区) 및 연선은 오염 관리를 진일보 심화시켜, 조수의 수질을 확보한다.  기타 유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철저히 진행한다. 장강(长江) 중하류, 주강(珠江)유역의 오염방지 역량을 강화하여 수질을 안정시키고 어느 정도 호전시킨다. 서남 제하(诸河), 서북내륙 제하(诸河), 동남 제하(诸河), 파양후(鄱阳湖), 동정호(洞庭湖), 홍택호(洪泽湖), 무선호(抚仙湖), 양자호(梁子湖), 박사등호(博斯腾湖), 애비호(艾比湖), 미산호(微山湖), 청해호(青海湖) 및 이해(洱海) 등을 수생태 안전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주요지역으로 삼아 수생태 환경 품질평가지표 체계를 모색하여 수생태 안전의 종합 평가를 전개한다.  수질오염방지 및 수생태 안전보장 조치를 이행한다. 화북성의 장호(长湖), 삼호(三湖), 백로호(白露湖), 홍호(洪湖) 및 운남성의 이룡호(异龙湖) 등의 종합관리를 강화한다. 흑룡강(黑龙江), 오소리강(乌苏里江), 도문강(图们江), 액이제사하(额尔齐斯河), 이리하(伊犁河) 등 하류에 대한 환경감독과 오염방지 역량을 강화한다. 수질이 양호하거나 생태가 취약한 호수에 대한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해양환경오염 및 생태파괴를 종합적으로 예방한다. 육해(陆海)규획, 하해(河海)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유지하고 발해(渤海) 등 중점 해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중점 해역의 오염총배출량 통제제도를 이행한다. 인근 연해 지역과 유역의 오염방지의 연결을 강화한다. 해안공정, 해양공정, 해양경폐 및 선박 오염에 대한 환경감독을 강화하여 생태 민감지역에서 간척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해수 양식의 오염물 배출 강도를 축소한다. 해안보호림 건설을 강화하여 빈해습지, 홍수림(mangrove), 산호초 등 전형적인 해양 생태시스템을 보호하고 복원한다.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호를 강화한다.  중점 해역에서 생물, 적조 및 오일유출 감독사업을 점차 늘려 해상 오일유출 등 사고의 긴급 대응을 강화한다. 해양환경 측량 데이터의 공유체제를 구축한다. 2015년까지 인근 연안지역의 수질을 전체적으로 안정을 지속하고 장강, 황하, 주강 등 하구 및 발해 등 중점 해안의 수질을 어느 정도 개선한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추진한다. 지하수 오염상태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지하수 오염관리구역, 방지구역 및 일반 보호구역을 규정한다. 중점 업종의 지하수 환경감독을 강화한다. 삼정(渗井), 삼경(渗坑)등 지하수 오염원을 단속하여 시추, 탄갱 등 오염경로를 폐쇄한다. 지하공정시설, 지하탐사, 오염지하수 채광활동을 방비한다. 위험폐기물, 도시오염, 농업 면원 오염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오염토양 및 오염수 관개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지하수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복구 테스트를 진행하고, 화북 지역의 지하수오염 방지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해수침입을 종합적으로 방지하는 시범 테스트를 전개한다.  (2) 다양한 대기 오염물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를 실시한다.  과립물 오염 통제를 심화시킨다. 공업 미세먼지 통제를 강화하여 석탄발전소, 시멘트 공장의 집진시설 개조를 추진한다. 철강업의 기존 소결(구단)설비는 전부 고효율의 집진기를 설치해야 하며, 가공과정의 집진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20 증톤(蒸吨)(포함)이상의 석탄 보일러는 고효율의 집진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타 중소형 석탄 공업보일러는 경미한 석탄재 또는 청정한 에너지 사용을 독려한다. 시공 공사현장, 잔류물 운수 및 도로 등의 먼지 통제를 강화한다.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과 독성 폐기가스 규제를 강화한다. 석유화학공업 업종의 생산,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의 휘발성 유기오염물질 배출 통제를 강화한다. 수성, 경미한 독성 또는 저휘발성의 유기용매 사용을 독려하여 정밀 화학 업종의 유기 폐기가스 오염 관리를 촉진시키고, 유기 폐기가스 회수이용을 강화한다. 주유소, 유류창고 및 유조차의 천연오일가스 회수종합처리공정을 실시한다. 휘발성 유기 오염물 및 독성 폐기가스 모니터링을 전개하여 중점 업종의 오염물 배출 표준을 개선한다. 오염원 감독을 엄격히 하여 수은, 납, 다이옥신 함양 등 유독 유해한 폐기가스 배출을 감축한다.  도시의 대기오염 예방을 추진한다. 대기오염을 공동으로 예방 통제하는 중점 지역에서는 지역 공기 환경품질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 협동 규제를 시행한다. 지역의 대기 오염물 특별 배출 제한을 실시한다. 화전, 철강, 유색, 석유화학공업, 건축자재, 화공 등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통제한다. 경진기(京津冀 북경, 천진, 석가장, 당산, 승덕,장가구, 보정, 랑방, 진황도, 창주, 한단, 형태, 형수시를 아우르는 경제권), 장삼각 및 주삼각 등 지역에서 오존, 초미세먼지(PM2.5) 등 오염물 측량을 전개하고, 지역 연합으로 법률 집행 검사를 시행한다. 2015년까지 상술한 지역의 복합형 대기오염은 통제를 받아 모든 도시의 대기환경 질량이 국가 2급 표준에 도달하거나 그 보다 우수하고 산성비, 안개, 광화학 스모그 오염이 뚜렷하게 감소한다. 청정한 대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오노목제(乌鲁木齐) 등 도시 대기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도시공기 품질을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고 여전히 표준 미달의 도시는 기준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찬음유연(餐饮油烟)오염 통제와 악취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농촌 소음환경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교통, 공사, 공업, 사회생활 등 분야의 소음공해 예방을 강화한다. 소음환경 기능구역을 지정 또는 조정하고 도시 소음환경의 목표관리를 강화하여 목표달성 기능구역의 면적을 확대한다. 중점 소음원을 통제하여 소음의 대중피해 문제를 해결한다. 소음 감독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3) 토양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토양환경 보호제도의 구축을 강화한다. 토양환경 품질관리를 완벽화 하고 농산품 산지 토양환경 보호감독 관리방법과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건설프로젝트 용지의 토양환경 품질평가와 비안제도 및 오염토양 조사 및 평가, 회복제도를 연구 수립하고, 복구 및 회복 책임주체와 요구를 명확히 한다.  토양환경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토양환경의 조사를 심화하고, 양곡, 채소기지 등 민감구역과 광산자원 개발 영향구역에 대해 중점조사를 진행한다. 농산품 산지의 토양오염평가와 안전등급 구분 시범시행을 전개한다. 도시와 광공업 기업의 오염장소 환경감독을 강화하고, 오염장소 재이용 환경위험 평가를 전개하며 장소 환경위험 평가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에 포함시켜, 평가를 거치지 않고 오염 무해처리를 거치지 않은 오염지의 토지이전이나 개방이용을 금지한다. 인체건강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장소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오염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택개발에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주민이 있는 경우 이전을 실시해야 한다.  중점지역 오염장소와 토양회복을 추진한다. 중대형 도시의 주변, 중대오염 광공업기업, 집중 오염처리 시설 주변, 중금속 오염방지 중점구역, 음용수 수원지 주변, 폐기물 노적지 등 전형적인 오염장소와 오염된 농지를 중점으로 하여 오염장소, 토양오염 처리와 회복의 시범시행을 전개한다. 책임주체 멸실 등 역사유물 장소의 토양오염은 회복처리의 투입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4) 생태보호 및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생태기능구역의 보호와 건설을 강화한다. 대소 흥안령 산맥(싱안링 산맥, 내몽골자치구동부 흑룡강성 북부산맥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백두산 삼림 등 25개 국가 중점생태기능 구역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관리메커니즘을 완벽화 한다.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생태시스템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평가를 전개한다. 생태보호와 복구공정을 시행한다. 중점 생태기능 구역의 오염물 총배출량 및 산업진입 환경표준을 엄격히 통제한다.  자연보호구역의 건설과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한다. 자연보호구역 기초조사와 평가를 전개하고 전국 자연보호구역 발전규획을 일률적으로 완벽화 한다. 자연보호구역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보호구역 범위와 기능별 구역구별 조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연보호구역의 개발건설 활동을 엄중히 제한하여 자연보호구역 내의 토지와 해역관리를 규범화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의 규범화 건설을 강화한다. 자연보호구역의 공간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서남부 고산협곡구역, 중남서부 산지구릉지역, 해안 해역 등 지역과 하류 수생 생태시스템 자연보호구역의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중동부 지역의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지역에 남아있는 자연 생물서식지에 대해 응급보호 조치를 취한다. 2015년까지 육지 자연보호구역 면적을 국토면적의 15% 수준이 되도록 한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한다.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전략과 행동규획(2011-2030년) >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생물다양성 보호 우선지역의 보호를 확대하여 8~10개의 우선지역의 생물다양성 본질조사와 평가를 완성한다.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의 시범시행 및 생물다양성 보호 시범구역, 시범구역 회복 등 건설을 전개한다. 중점지역 및 업종 유전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생물 종(种) 자원의 출입국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생물유전자원의 취득과 혜택을 공동으로 향유하는 제도를 연구 건설한다. 외래종의 침투 방지 및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규를 연구 제정한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환경방출과 환경개선 용도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유해종 예방퇴치를 전개한다. 위협을 받고 있는 동식물과 외래 침입종 리스트를 발표한다. 2015년까지 90%의 국가 중점보호 종(种)과 전형적 생태시스템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원개발 생태환경 감독관리를 추진한다. 생태기능 구역의 구분을 시행하고 자원개발 이용활동을 규범화 한다. 광산, 수력발전, 여행자원 개발과 교통 인프라 건설 중의 생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업의 생태보호 및 복구 책임을 이행하도록 한다. 광산 환경처리와 생태회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  **5. 중점영역 환경위험의 예방 및 제어를 강화한다.**  (1) 환경위험 전 과정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위험 조사와 평가를 전개한다. 중금속, 위험물질, 유해성 유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위험화학품을 생산 및 사용하는 기업들을 중점으로 중점 환경위험원과 환경 민감점을 전면 조사하고, 환경위험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환경위험의 발생, 전파, 예방/통제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 조사를 전개하고 환경과 건강의 위험평가체계를 건립한다.  환경위험관리 조치를 완벽화 한다. 예방 위주의 환경 위험관리 제도를 완벽화 하고 기업주체 책임을 시행한다. 환경위험 평가 규범을 제정하여 유관 기술정책, 표준, 공정건설 규범을 완벽화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은 환경위험 방비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돌발 환경사건 보고와 응급처리제도, 특정 오염물 모니터링 보고 제도를 구축한다. 중점 위험원, 중요/민감 구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 검사를 진행하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감독관리 현판 걸기, 기한 내 정리개선 또는 이주 등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리개선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하여 폐쇄를 명령한다. 환경 응급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 응급 대책안을 완벽화 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사고 응급훈련을 전개한다. 돌발 환경사건 응급 지원체계를 완벽화 하고 정부의 지도, 부문별 협조, 등급별 책임, 사회적 참여 등의 환경응급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법에 의거하여 돌발 환경사건을 과학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한다.  환경사고 처리와 손해배상 회복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중대 돌발 환경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방비와 적절한 대처를 지방 인민정부의 중요임무로 삼고 환경보호 목표책임제에 포함시킨다. 환경오염 손해 감정평가 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손해배상제도를 완벽화 한다. 손해평가, 손해배상 및 손해복구 기술체계를 건립한다. 환경오염 책임보험제도를 건전화하고 중금속 배출 등 환경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강제 보험제도를 연구 건설한다.  (2) 핵과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원자력 에너지와 핵기술 이용의 안전수준을 제고한다. 중대 자연재해가 핵시설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분석과 예측예보를 강화한다. 핵안전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운영의 신뢰도를 진일보 제고한다. 연구물과 핵연료 순환시설의 안전 개혁을 강화하고 안전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설은 제한운행 또는 점진적으로 폐쇄시킨다. 핵기술 이용을 규범화하고 핵기술 이용 단위의 종합 안전검사를 전개하며, 안전우려가 큰 핵기술 이용 프로젝트에 대해 강제 퇴출을 실시한다.  핵과 방사능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핵과 방사능 안전 심사평가 방법을 완벽화 한다. 핵시설 운영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의 안전분석과 평가를 강화하여 핵 안전허가증 제도를 완벽화 한다. 조기에 핵시설의 안전관리를 완벽화 한다. 핵재료, 방사성 물질의 생산, 운송, 저장 등 일환의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핵기술 이용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핵기술 이용 방사능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완벽화 한다. 방사능 환경품질의 모니터링과 핵시설 유출물의 감독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핵과 방사능 안전감독관리 국제합작 메커니즘을 완벽화하고 핵안전 홍보와 과학보급교육을 강화한다.  방사성 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조기 핵시설 퇴출과 방사성 오염처리를 추진한다. 민영 복사선 조사(照射)장치 퇴출과 폐기물 회수 업무를 전개한다. 방사성 폐기물 저장, 처리와 처분능력의 건립을 가속화 하고 기본적으로 역사유물 중 폐액(废液) 저배출 안전위험을 제거한다. 우라늄광, 부차적인 방사성광 오염의 처리를 가속화 한다. 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우라늄광 야금 시설을 폐쇄하고 우라늄광 퇴출처리 공정의 장기보호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3) 중금속 오염사건의 잦은 발생을 억제한다.  중정업종과 지역의 중굼속 오염예방을 강화한다. 유색금속광(부속 광 포함) 선별업, 유색금속 제련업, 납축전지 제조업, 피혁 및 그 제품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업종을 중점으로 예방통제 역량을 확대하고 중금속 유관기업의 낙후 생산능력 도태를 가속화 한다. 중금속 유관기업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업종의 진입장벽을 제고하여 위생 예방보호 격차를 엄격히 시행한다. 신규 증가한 생산능력과 도태된 생산능력 등 양의 치환 또는 감량 치환을 견지하고, 중점지역에 중금속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 시키는 신규 확대 건설을 금지한다.  각 성(구, 시)가 그 비중점 지역 내의 중금속 배출량을 치환, 거래하는 것의 시범 시행을 독려한다. 중점지역, 업종의 중금속 오염물 특별배출 한도수치를 제정 시행한다. 상강(역주: 후난(湖南) 성을 남북으로 흐르는 강) 등 유역 및 지역의 중금속 오염 종합처리를 강화한다. 2015년 까지 중점지역 내의 중점 중금속 오염물 배출량을 2007년보다 15% 감소하게 하며, 비중점 지역의 중점 중금속 오염물 배출량이 2007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중금속 오염원 종합 예방을 시행한다. 중금속 유관기업이 중점 오염원으로서 관리를 진행하고 중금속 오염물 발생 및 배출대장을 구축하며, 감독성 모니터링 제도와 검사제도를 강화한다. 중점기업에 대해 2년마다 1회씩 강제로 청정생산 심사를 진행한다. 중금속 유관산업 기술의 진보를 추진하고 기업이 심층적 처리를 전개하는 것을 독려한다. 납축전지 제조업, 유색금속 제련업, 피혁 및 그 제품업, 전기도금 등 업종의 동 유형 종합, 공업원구화(园区化) 관리 시행을 독려하고, 공업원구의 환경보호 요구를 강화한다. 중금속 오염의 건강 위해 모니터링과 진료체계를 건전화한다.  (4) 고체 폐기물의 안전처리 처분을 추진한다.  위험폐기물 오염예방을 강화한다. 위험폐기물 전과정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중점 감독관리하는 위험폐기물 발생 단위리스트를 확정하여 위험폐기물 발생 단위와 경영단위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며, 위험폐기물의 불법이전을 제거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이용처리 시설에 대해 배출검사, 평가를 진행하며, 위험폐기물 이용과 처리의 산업화, 전문화와 규모화 발전을 촉진한다. 위험폐기물 매장량을 통제한다. 납축전지 불법가공이용 시설을 금지 폐쇄한다. 실험실 등 비공업원 위험폐기물 관리를 규범화한다. 역사적으로 퇴적된 Chromic slag(铬渣)의 안전처리를 가속화하고 새로 증가한 Chromic slag의 무해화 이용처리를 보장한다. 의료폐기물의 전 과정 관리와 무해화 처리 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향진과 외진 지역의 의료폐기물 무해화 관리를 지역에 따라 적절히 시행한다. 2015년까지 기본적으로 지(地)급 이상 도시의 의료폐기물이 무해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공업 고체폐기물의 오염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공업 고체폐기물 이용과 처리의 우대혜택을 완벽화 한다. 공업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과 처리 기술의 개발을 강화하고 석탄맥석, 분탄재, 공업부산 석고, 제련과 화공 고형폐기물 등 대량의 공업 고체 폐기물의 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2015년까지 공업 고체 폐기물의 종합 이용률이 72%에 이르도록 하며, 생산자가 책임지고 확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폐기 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처리활동을 규범화 하고 폐기물의 회수체계와 집중 가공 처리원구를 건설하여 자원의 종합이용을 추진한다. 폐기물 수입 지역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쓰레기 처리 수준을 제고한다. 도시(城镇)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을 가속화 하고 2015년 까지 전국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이 80%에 이르도록 하여 모든 현이 생활 쓰레기 무해화 처리 능력을 구비하도록 한다. 생활 쓰레기의 분리수거 제도를 건전화 하고 분리수거, 밀봉운송, 집중처리 체계를 완벽화 하여 시설 운영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쓰레기 간이처리 또는 적재시설과 장소에 대해 복원을 진행하고 이미 밀봉된 쓰레기 매립지와 오래된 쓰레기 장에 대해 생태 복구, 개선을 진행한다. 쓰레기 혐기제기(厌氧制气), 화력발전과 열공급, 매립가스 발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이용을 독려한다. 쓰레기 삼투액과 쓰레기 연소 분진처리 공정 건설을 촉진한다. 공업 생산과정과 생활 쓰레기 및 슬러지의 합동 처리 시범시행을 전개한다.  (5) 화학품 환경위험 예방통제 체계를 건전화 한다.  화학품 환경의 감독관리를 엄격화 한다. 위험화학품 환경관리 등기 및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기제도를 완벽화 한다. 유독 유해 화학품 도태 리스트를 제정하고, 법률에 의거, 고도의 유독성, 난(难) 분해, 환경 고위해 화학품을 도태시킨다. 중점 환경관리 화학품 리스트를 제정하여 환경 고위험 화학품의 생산과 사용을 제한한다. 유관 업종의 진입표준, 환경품질 표준, 배출표준과 모니터링 기술 규범을 완벽화하고, 배출, 전이 보고제도를 보급하여 강제적인 청정생산 심사를 전개한다. 화학품 환경 관리기구를 건전화 하고 화학품 환경오염 책임 종신 추궁제와 전 과정 행정문책제도를 건립한다.  화학품의 위험예방 통제를 강화한다. 화공 공업원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건설하는화공 공업원구의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을 엄격히 하며, 현재 화공기업 집중구역의 업그레이드를 강화한다. 위험화학품과 관련된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화공 공업원구 또는 화공 집중구역으로 들어가야 하며, 기존의 화공 공업원구 외부에 있던 기업은 점진적으로 공업원구 안으로 이전해야 한다. 화공 공업원구 환경보호 시설의 건설표준을 제정하고 공업원구 유관 시설과 환경 응급체계 건설을 완벽화 한다. 중점 환경관리류 위험화학품 폐기물과 오염장소의 관리와 처리를 강화한다. 위험화학품 기업의 위험화학품 폐기 임시저장고 건설과 처리능력 건설을 추진한다. 철광석 소결, 전호로 제강(电弧炉炼钢), 재생 유색금속 생산, 폐기물 연소 등의 업종을 중점으로 다이옥신 오염예방을 강화하고, 완벽한 다이옥신 오염예방 체계와 장기효과적인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2015년 까지 중점 업종의 다이옥신 배출강도를 10% 감소시킨다.  **6. 환경보호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의 완벽화**  (1) 환경보호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한다.  국가환경기능 구역 구분을 제정한다. 다른 지역의 주요 환경기능 차이에 근거하여 환경을 건강히 보존, 자연 생태의 안전을 보육, 식품산지 환경 안전을 보장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여, 전국 주체 기능구역 규획을 결합하고 국가 환경기능 구역 구분을 편제한다. 중점 생태기능 구역, 육지와 해양 생태환경 민감구역, 취약구역 등 구역을 “생태 경계선”으로 구분한다. 각각 다른 지역의 환경목표, 정책과 환경 표준을 제정하고 분류별 지도, 구역별 관리를 시행한다.  최적화 개발과 중점개발 지역의 환경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엄격한 오염물 배출 표준을 시행한다. 오염물 총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환경위험 방비를 강화하여 생태공간을 보호하고 확대한다. 농산품 주산지에 대한 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토양 침식과 양식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자연문화자원 보호구역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강제적 보호를 시행하고, 자연생태와 문화유산의 고유성, 완정성을 보호한다. 법률에 의거하여 오염기업을 폐쇄 또는 이전시키고 오염물의 “제로 배출”을 실현한다. 에너지기지와 광산자원 기지 등 구역의 환경 진입을 엄격화 하고 자연자원의 합리적이고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지역별 환경 보호 전략을 시행한다. 서부지역은 생태우선 전략을 견지하여야 한다. 수력에너지, 광산 등 자원에너지 개발활동의 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그 생태서비스 기능을 보호하고 제고하여 국가 생태안전 보호벽을 건설한다. 3강(三江源, 장강, 황하, 란창강) 원지는 생태보호 종합 실험구역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탑리목강(塔里木河)유역은 생태처리와 사막화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호포악유(呼包鄂榆), 관중-천수(关中-天水), 란주-서녕(兰州-西宁), 영하 황하연안(宁夏沿黄), 천산 북쪽비탈(天山北坡)등 구역은 수자원 다소비 업종의 발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수자원 이용수준을 제고하고, 따뜻한 시기의 연탄가스형 대기오염을 통제한다. 성유(成渝), 검중(黔中), 장중남(藏中南) 등 지역은 산성비 오염 예방을 강화해야 하며, 사막화 처리와 고원 호수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동북지역은 삼림 등 생태 시스템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3강 평원, 송눈평원(松嫩平原) 습지의 복구를 전개하고 흑토지대의 수토유실과 사막화의 종합처리를 강화한다. 동북평원 농산품 산지의 토양 환경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요중남(辽中南), 장길도(长吉图), 하대제(哈大齐) 와 모수(牡绥) 등 지역은 따뜻한 시기의 도시대기 오염처리를 강화하고, 송화강(松花江), 요하(辽河) 유역과 인근 바다의 오염 예방을 추진해야 한다. 채탄 침수구역의 종합처리와 광산환경의 복구를 강화해야 하며, 석유 등 자원개발 활동의 생태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부지역은 구역별 자원환경 지원능력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 기초시설 건설 수준을 제고하고, 환경품질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태원(太原) 도시군과 중원(中原) 경제구역은 구역의 대기 오염처리 합작을 강화하여 수자원 다소비 업종의 발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채탄 침수구역의 생태복구를 강화한다. 무한(武汉)시 도시권과 환장주담(环长株潭, 호남성 동중부 지역) 도시군, 환강(皖江) 도시지대 등 지역은 구역자원 지원력과 생태환경 용량을 지원산업 이전의 주요 근거로 삼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진입장벽을 엄격화 하고 도시와 농촌 환경보호의 일괄적인 규획을 수립하여,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판양호(鄱阳湖) 생태경제구역의 생태환경 보로를 강화한다.  동부지역은 오염물 총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자원환경에 장애가 되는 제약을 제거해야 한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지역은 환경관리 메커니즘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지역 복합형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하북 연해(河北沿海), 강소 연해(江苏沿海), 절강 주산군도 신구(浙江舟山群岛新区), 해협서안(海峡西岸), 산동반도(山东半岛) 등 지역은 자원에너지 이용효율을 진일보 제고하여, 해안지대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해남국제여행섬은 환경 기초시설 건설추진을 가속화 한다.  지역 환경보호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한다. 합리적으로 환경 보호 기본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표준을 확정하고 도시와 농촌, 구역의 일률적인 규획 수릭을 강화하여 환경보호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건전화 한다. 중앙재정은 일반성 이전지원과 생태보상 등 조치를 통해 서부지역, 개발 금지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특수 곤란지역의 지원정도를 확대하고 환경 보호 기본공공서비스의 지원 수준을 제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기본 공공서비스 지출을 보장하여 기층의 환경관리감독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2) 농촌환경보호 업무 수준을 제고한다.  농촌 음용수 안전을 보장한다. 농촌 음용수 수원지의 조사평가를 전개하여 농촌 음용수 수원 보호구역의 보호범위 구분 업무를 추진한다. 음용수 수원의 환경 종합처리를 강화한다. 농촌 음용수 수원지의 환경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완벽화 하며, 법률집행 검사 정도를 확대한다. 환경보호 홍보교육을 전개하고 농촌 주민들의 수원 보호의식을 제고한다. 조건을 구비한 지역은 도시/농촌의 용수공급 일체화를 추진한다.  농촌 생활오수와 쓰레기 처리 수준을 제고한다. 향진과 규모가 비교적 큰 촌락이 집중식 오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도록 독려한다. 도시 주변 마을의 오수를 도시 오수 집관망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도록 하며, 분산적으로 거주하는 촌락은 분산식, 저 예산, 관리가 용이한 오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도록 독려한다. 촌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주변 마을의 무해화 처리시설과 수집운반 시스템을 총괄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현지처리 방식을 모색하고 농촌 생활쓰레기의 시작단계부터 분류, 현지 감량, 자원화 이용의 실현을 유도해야 한다.  농촌의 파종, 재배업의 오염예방 수준을 제고한다. 농민이 생물농약 또는 고효율, 저독성, 저잔류성 농략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농약포장은 무해화 처리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토지측량 비료사용을 전폭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 농업발전을 추진한다. 농업용 폐비닐, 짚가리 등 농업 생산폐기물의 자원화 이용을 강화한다. 수산 양식의 오염조사를 전개하여 태호(太湖), 소호(巢湖), 홍택호(洪泽湖)등 호수의 수산양식 면적과 미끼수량을 감소시킨다.  중점구역의 농촌환경 질을 개선시킨다. 농촌환경의 종합처리 목표책임제를 시행하고, 농촌 청정공정을 시행한다. 보급 적용하는 종합 처리양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드러난 촌락과 마을의 문제를 전력 해결한다. 2015년까지 6만개 촌락의 환경종합 처리 임무를 완수한다. 농촌지역 공업발전배치를 최적화하고, 공업프로젝트의 환경진입을 엄격화 하며, 도시와 공업오염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한다. 농촌지역의 화공, 전기도금 등 기업의 이전과 폐쇄 후의 잔류 오염에 대해 종합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3) 환경 감독관리 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기초, 보장, 인재 등 공정을 중점으로 환경 감독관리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건설을 추진한다. 2015년까지 기본적으로 오염원과 총배출량 감축의 감독관리 체계, 환경 품질 모니터링과 평가심사 체계 및 환경 조기경보와 긴급대응 체계를 형성시키고, 초보적으로 환경 감독관리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오염배출 통계, 모니터링, 심사 체계를 완벽화 한다. 오염원 자동 감독통제 시스템 건설, 감독관리와 운영보호를 강화한다. 농촌과 동력엔진 차량 저배출 감독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모니터링, 감찰, 홍보교육, 통계, 정보 등 환경 보호능력의 표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도시 환경의 기본적임 관리감독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경진기(京津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경제발달지역과 고오염 지역 및 기타 조건을 구비한 지역의 환경감찰을 향진, 촌락으로 확대한다. 중서부지역의 현급 및 일부 지시(地市)급 모니터링 감찰기구를 중점으로 기층 환경 모니터링 법률집행 업무 건물을 건설한다. 농업과 농촌환경 통계를 전개한다. 근원 오염 총배출량 통제연구를 전개하고, 근원 오염 배출 감축의 심사검증 체계 건립을 모색한다.  환경질량 모니터링과 평가심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환경 모니터링 단면(지점)을 최적화하고 환경품질평가, 심사, 예비경보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중점지역에 환경 모니터링 국가 감찰소를 건설하고, 국가 모니터링망의 자동 모니터링 수준을 향상시킨다. 지역 특정 오염물의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물 등 전형적으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특정 오염인자 배출원 모니터링을 전개한다. 특정 오염물 모니터링을 지방 일상 모니터링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독려한다. 농촌 음용수 수원지, 촌락 하류(수자원 저장고)에 대해 수질 모니터링 시범시행을 전개하고, 전형적인 농촌지역 공기 연구소 또는 지역 연구소의 건설을 추진한다. 유동적인 모니터링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환경 모니터링 복개율을 제고하여 농촌환경 품질 조사 평가를 구동한다. 생물모니터링을 전개한다. 환경 전용위성의 건설 및 이용을 추진하고, 위성 원격탐지 모니터링과 지면 모니터링을 상호 결합한 국가 생태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과 평가를 전개한다. 전국 방사능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환경 예비경보 및 응급조치 체계의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 성, 시 3급 자동 감독제어 시스템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예비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정보의 기초, 통계 및 업무응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정보 자원센터를 건설한다. “The Internet of things”와 전자식별 등 수단을 사용하여 위험화학품 등의 보관, 운송 등 단계에서의 전체 과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한다. 환경 응급조치 능력의 표준화 건설을 강화한다. 중점지역 및 구역의 환경에 대한 응급조치 및 감독관리 기구의 건설을 강화한다. 핵과 방사능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한 핵시설에 대한 감독형 모니터링 시스템과 기타 핵시설의 유출물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 핵 및 방사능안전 감독기술 연구개발기지, 중점실험실, 업무용 부동산 건설을 추진한다. 핵과 방사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에 호응하는 것과 반테러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강화하고, 응급조치 의사결정, 지휘지도 시스템 및 응급조치 물자비축을 완벽히 한다.  환경감독관리를 위한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능력을 제고한다. 경비 보장 채널과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운영경비 정액표준과 갱신 메커니즘에 따라, 국가 및 지방의 환경감독관리 네트워크 운영, 설비 갱신 및 업무용 부동산의 수리 개조를 보장한다. 인력자원의 확보를 강화하고 인원의 소질을 제고시킨다. 핵 및 방사능안전 감독관리와 핵안전 중요 직책인원에 대한 기술자격 관리제도를 연구하여 구축한다. 훈련메커니즘을 완전하게 만들고 시, 현의 2개 등급 특히 중서부 지역의 환경 감독관리 인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한다.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한다. 정기적으로 환경 전문 기술대회를 개최한다.  **7. 중요한 환경보호 공정의 실시**  “12차 5개년” 환경보호 목표와 임무를 실제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환경보호 공정(전체 사회 환경보호 투자 수요는 약 3.4만 억 위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그 중, 우선 8개 환경보호 중점 공정을 실시하고, 일련의 환경기초 조사 및 시범지역 시범업무를 전개하며, 투자 수요는 약 1.5만 억 위안이다. 시장메커니즘을 충분히 이용하고, 다원화된 투입 구조를 형성하며, 공정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정투입은 기업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상이한 상황에 따라 구별하여 지원한다. 정기적으로 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평가를 전개하여 투자 효익을 제고한다.   |  | | --- | | **특별란 2：“제12차 5개년”환경보호 중점 공정** | | 주요 오염물 배출감소 공정. 도시 생활 오수처리시설 및 부대 파이프망, 침적물 처리 처치, 공업용수 오염방지, 가축 양식 오염방지 등 수자원 오염물 배출감축 공정과 전력업종의 탈황 탈질소, 강철 소결기 탈황 탈질소, 기타 비전력 중점업종의 탈황, 시멘트 업종과 공업용 보일러의 탈황 등 대기 오염물 배출감축 공정을 포함한다.  민생환경 개선 보장 공정. 중점지역의 수자원 오염 방지 및 수질 생태 복구, 지하수 오염방지, 중점 지역의 대기 오염 연합 방지 및 통제, 오염된 장소와 토양의 오염 정리 및 복구 등 공정을 포함한다.  농촌환경보호 위민 공정. 농촌환경의 종합적인 정리정돈, agriculture surface resource pollution 방지 등 공정을 포함한다.  생태환경보호 공정. 중점 생태기능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의 건설, 생물 다양성 보호 등 공정을 포함한다.  중점분야의 환경위험 예방공정. 중금속 오염방지, 영구성 유기 오염물과 위험화학품의 오염 방지, 위혐폐기물 및 의료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 등 공정을 포함한다.  핵과 방사능안전보장 공정. 핵 안전과 방사성 오염 방지를 위한 법규 표준 체계의 건설, 핵과 방사능안전 감독관리 기술연구 기지의 건설, 방사능환경 모니터링, 법률이행 능력의 건설, 인재육성 등 공정을 포함한다.  환경기초시설 공공서비스 공정. 도시 생활쓰레기, 위험 폐기물 처리 처치 시설의 건설, 도시 및 농촌음용수 수원지 안전보장 등 공정을 포함한다.  환경 감독관리 능력의 기초적인 보장과 인재양성 공정. 환경 모니터링, 감찰, 경보, 응급조치 및 평가능력의 구축, 오염원에 대한 온라인 자동 감독통제 시설의 건설과 운영, 인재/선전과 교육/정보/과학기술 및 기초조사 등 공정의 건설, 완전한 성/시/현 3급 환경 감독관리 체계의 구축을 포함한다. |   **8. 완전한 정책적 조치**  (1) 환경목표 책임제를 철저하게 시행한다.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지표적 체계를 제정하고,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의 정책 업적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환경보호 1표 부결제를 실행한다. 주요 오염물에 대한 총량적 배출감축 심사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환경 품질감독 심사를 탐색하여 전개한다. 환경목표 책임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주요 오염물의 배출감축, 환경품질, 중점 유역의 오염방지 규획의 실행 현황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환경목표 임무를 완성하지 않았거나 중대하고 특별하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約談(중국의 독특한 제도로써 행정직권을 보유한 기관이 회담을 통한 소통, 정책법규의 학습 및 분석과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하급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수정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의미함)을 진행하고, 구역의 비준을 제한하며, 유관 간부의 책임을 추궁한다.  (2) 종합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완벽히 한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환경보호 부문을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며, 유관 부처가 서로 협력하고,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 관리체계를 완벽히 한다. 환경보호부서 연석회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부서간 연합 협동과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적 통제요구, 환경 용량, 환경 기능구역 및 환경 위험평가 등 요소를 구역 및 산업발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는다. 법에 의거하여 중점 유역 및 구역 개발, 업종 발전 규획 및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개한다. 규획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연동 메커니즘을 완전히 한다. 건설프로젝트 의 환경보호 검수제도를 완벽히 한다. 환경영향평가 심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보호 중점도시의 도시 전체 규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도시 환경보호 총괄규획을 모색하여 편성한다.  (3) 법규 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청정생산촉진법,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환경소음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의 수정과 관련한 기초 연구업무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총량 통제, 음용수 수자원 보호, 토양 환경보호, 오염물 배출 허가증 관리, 가축 양식 오염방지, 기동차량 오염방지, 유해 유독 화학품 관리, 핵 안전 및 방사성 오염 방지, 환경오염 손실방지 등 법률 법규를 연구하여 입안한다.  환경품질 표준, 오염물 배출 표준, 핵발전 표준, 민간용 핵 안전 설비 표준, 환경 모니터링 규범, 환경기초 표준제도 수정 규범, 관리 규범류의 환경보호 표준 등 제정 (수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전개한다. 대기, 수자원, 해양, 토양 등 환경품질 표준을 완벽히 하고, 오염물 배출 기준 중에 일반적인 오염물과 유독 유해 오염물의 배출통제 요구를 완벽히 하고, 수질 오염물의 간접 배출 통제와 기업의 주변 환경에 대한 품질 감독 통제 요구를 강화한다. 환경 위험 근원의 식별, 환경위험평가 및 예견치 못한 환경사고의 응급조치 환경보호 표준의 건설을 추진한다. 지방이 지방 오염물 배출표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4) 환경경제 정책을 완벽히 한다.  석탄발전소의 연기 탈황 전기가격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탈황 전기가격 정책을 연구하여 제정한다. 오수처리, 오염 침적물의 무해화 처리 시설, 비전력 업종의 탈황 탈질소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 기업에 대하여 정책적 우대를 시행한다. 비거주용 용수와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초과 누진 가격제도를 실행한다.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대하여 차별적인 용수 가격제도를 시행한다. 기업이 폐수를 “제로 배출”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조치를 연구한다. 오염물질 배출권한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사용하는 제도를 완전하게 구축하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시장을 발전시킨다.  환경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오염물 배출 수수료 제도를 완전히 한다. 오염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오수처리 수수료 제도를 완전하게 만들고, 수수료 표준이 오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오염 침적물 무해화 처리의 수요를 점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방식을 개혁하고, 징수 역량을 강화하며, 쓰레기 처리 수수료 표준과 재정 보조수준을 적절하게 제고한다.  기업환경행위에 대한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환경보호 요구 및 신용대출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은행 녹색 등급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녹색 신용대출 성과와 은행 업무인력의 직능이행 평가, 기구 진입, 업무발전을 서로 연동시킨다. 정책적인 녹색 구매를 추진하고 환경보호 제품의 비준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환경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를 연구하여 추진한다. 환경보호 종합명단을 제정하여 완벽히 한다.  국가 생태보상 전용자금을 모색하여 수립한다. 생태보상조례를 연구, 제정 및 시행한다. 유역, 중점 생태기능구역 등 생태 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자원형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준비금 제도를 추진한다.  (5)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 과학기술 연구 및 응용능력을 향상시킨다. 환경 기준 및 표준 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초를 다지고, 환경조사 평가, 모니터링 경보, 위험 예방 등 환경관리기술체계를 완벽히 한다. 국가 환경보호 중점실험실, 공정기술센터, 야외 연구 검측 연구시설 등의 건설을 추진한다. 수체 오염통제 및 정리 등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문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시행하고, 오염 통제 및 생태보호와 환경위험 예방을 위한 하이테크 기술, 핵심기술, 공용성 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쓴다. 질소산화물, 중금속, 영구성 유기 오염물, 위험화학품 등에 대한 통제기술과 우리나라의 국정에 적합한 토양 회복, agriculture surface resource pollution 정리 등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탈황 탈질소 일체화, 인과 질소의 제거 일체화 및 중금속 제거 등 종합적 통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힘써 추진한다. 선진기술의 시범 및 보급을 강화한다.  (6) 환경보호 산업을 발전시킨다.  중점 공정의 수요에 입각하여, 정책의 시행을 강화하고 오수처리, 쓰레기 처리, 탈황 탈질소, 토양회복 및 환경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하는 장비제조업의 발전을 힘써 추진한다. 또한 신형 환경보호 소재, 약제 및 환경 친화적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시범화한다. 다업종 및 다기업간 순환이용 연합체계의 건설을 추진한다. 환경보호 시설의 운영자격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연무 탈황 탈질소, 도시 오수 쓰레기 처리, 위험 폐기물 처리 처치 등 오염시설의 건설과 운영의 전문화, 사회화, 시장화 진전을 추진하며, 연무 탈황시설에 대한 특허경영을 추진한다. 환경보호 산업 통계 표준을 제정한다. 공정 투자 융자, 설계 및 건설, 시설 운영과 유지보수, 기술 컨설팅, 청정생산 심사, 제품 인증 및 인재 육성 등 환경서비스 업종의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적 조치를 연구하여 제정한다.  (7) 투입역량을 강화한다.  환경보호를 각급 재정연도 예산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동급 환경보호 능력 건설 경비에 대한 안배를 적정하게 증가시킨다. 중서부 지역의 환경보호 지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 환경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및 환경품질 현황을 개선하는 것을 연결하여 추진하고 일반적인 이전 지불제도를 완벽히 하며 국가 중점 생태기능구역, 중서부 지역 및 민족자치 지방 환경보호에 대한 이전 지불역량을 강화한다.”장려를 통한 예방방지 촉진”, “장려를 통한 정돈 촉진”, “장려를 통한 보상 대체” 등의 정책을 심화시키고 각급 재정자금의 유인 역할을 강화한다.  환경 금융상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시장화된 융자 메커니즘을 완벽히 한다. 오염물질 배출권의 저당-융자모델을 모색한다. 재정적 투입과 은행 대출, 사회자금의 결합사용 모델을 추진하여 수립한다. 조건을 갖춘 local government platform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융자방식으로 환경보호 융자 채널을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조건을 갖춘 환경보호기업의 채권발행 또는 체제개혁을 통한 상장을 지원하고 조건을 갖춘 환경보호 상장회사가 재융자를 진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환경보호 설비 시설의 융자임대 업무를 모색하여 발전시킨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보호산업 발전기금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각종 창업투자기업, 지분권 투자기업, 사회 기부자금 및 국제원조자금이 환경보호 영역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도록 유인한다.  (8) 법률집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한다.  환경감찰체제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법률집행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법률집행의 효율을 제고한다. 多-행정구역 환경 법률집행 합작 메커니즘과 부서별 연동 법률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불법 오염물 배출기업의 정돈 및 대중의 건강한 환경보호 전문 행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방식을 개선하고, 법률집행 역량을 강화한다. 환경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환경안전사고의 위험을 제거한다. 산업이전과 관련한 환경 감독관리의 연계를 강화한다. 유역, 구역, 업종 비준제한 및 공시입찰 감독 등 감독검사 제도를 심화한다. 환경 법률법규의 집행 및 환경문제 정돈 이행 이후에 대한 감찰을 전개하고, 중요한 환경사고 및 오염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제도를 완전히 한다. 환경보호 법정의 설치를 장려한다.  (9) 지방 인민정부의 적극성을 발휘한다.  환경보호 격려조치를 더욱더 심화하고, 지방 인민정부가 환경오염 예방과 정리에 있어서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책임간부의 정책 업적 종합평가체계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가 환경보호를 전체 업무 중 중요한 위치에 설정하도록 유도하며,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 관련 중요문제에 대하여 적시에 연구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중앙 환경보호 투입 관리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지방 인민정부가 투입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생태문명 건설의 시범지역을 추진하고 환경보호 모범도시, 생태시범구역 등의 창건 활동 전개를 장려한다.  (10) 부서간 협동하여 환경보호를 추진한다.  환경보호 부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 협조, 감독 및 종합적 관리를 강화한다. 개혁, 재정 등 종합부서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재정 및 세제, 산업, 가격과 투자정책을 제정한다. 과학기술 부서는 오염물 배출 통제, 환경품질 개선 등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범지원을 강화한다. 공업부서는 기업기술의 개조 역량을 강화하고 업종 진입을 엄격히 하며, 낙후된 생산능력의 퇴출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공업 오염의 예방을 강화한다. 국토자원부서는 생태용지의 개발을 통제하고 광산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정돈 및 복구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중점공정 건설용지를 보장한다. 주택성향건설부문은 도시 및 농촌의 오수와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건설 및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교통운수 및 철도 등 부서는 도로, 철도, 항구, 항로 등의 건설과 운송 과정에서의 생태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수리부문은 수자원 이용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생활, 생산 경영 및 생태환경 용수를 총괄하여 협조하며 하역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엄격히 하고, 수자원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며, 수토 유실 정돈을 강화한다. 농업부문은 비료, 농약의 과학적인 사용을 위한 지도와 유인을 강화하고 가축 양식 오염방지, 농업 절수, 농업 품종 자원, 수생 생물자원, 어업 수역 및 목초지 생태 보호를 강화하고, 외래 품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상무부서는 여관, 호텔의 오염통제를 엄격히 하고 녹색 무역을 추진하여 전개하며 무역 환경장벽에 대응한다. 위생부서는 환경과 건강의 연계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금속 치료시스템의 구축 역량을 강화한다. 세관부문은 폐기물 수출입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밀사 위험물질의 환경안전 위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역량을 강화하며, 위험폐기물의 불법 국경 이동을 근절한다. 임업부문은 임업 생태 건설 역량을 강화한다. 여행부문은 여행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여행구역의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소비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통제하고 에너지의 구조적 전략 조정을 시행하며,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한다. 기상부문은 대기오염방지 및 수질 환경 종합정리 기상 모니터링 경보서비스와 핵 안전 및 방사성 오염 기상 응급조치 대응서비스를 강화한다. 해양부문은 해양 생태보호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의 건설을 추진하며 해양공정, 해양쓰레기 배출 등에 대한 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11) 전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전민 환경교육 행동규획을 시행하고, 전체 사회가 환경보호에 참여하도록 동원한다. 녹색 창건활동을 추진하고 녹색 생산 및 생활방식을 제창한다. 매체 발표 및 중요한 환경정보의 공개제도를 완전하게 만든다. 도시 환경품질, 중점 오염원, 중점 도시 음용수 수질, 기업환경 및 핵 발전소 안전 정보의 공개를 추진하고 유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환경정보 강제 공개제도를 구축한다. 기업이 더욱더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도록 유인한다. 완전한 환경보호 고발제도를 구축하고 환경 민원, 12369 환경보호 핫라인, 이메일 등의 민원 고발 채널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고발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장려한다. 환경 관련 공익적 소송을 지지한다.  (12) 국제적인 환경 협력을 강화한다.  기타 국가, 국제조직과의 환경 합작을 강화하고 해외의 선진적인 환경보호 이념, 관리모델 및 오염정리 기술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정책과 진행 정도를 선전한다. 국제환경공약, 핵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 등 공약의 이행업무를 힘써 추진하고, 국내의 협조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며, 업무이행에 대한 중앙 재정의 투입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자원과 기타 채널을 통해 자금을 서로 결합하여 이행자금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환경 및 무역과 관련한 협상과 유관 규칙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과 무역의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환경 권리와 이익을 유지 및 보호한다. “오염이 심각하고 환경 위험이 높은” 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 정책을 연구하여 조정하며,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오염물 배출이 많은 제품의 수출을 억제한다. 수출입 무역과정에서의 환경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기술, 시설 등의 도입을 금지하고 녹색무역의 추진에 힘쓴다.  **9. 조직영도 및 평가 심사 강화**  지방 인민정부는 규획을 실시하는 책임주체로서 규획 목표, 임무, 조치 및 중요 공정을 해당 지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전체규획에 포함시키고, 규획 이행현황을 지방정부 책임간부의 종합 실적평가를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국무원 각급 유관 부문은 각 부문의 직책을 이행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시스템적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자금 투입을 확대하며, 규획의 실행을 추진한다. 2013년 연말과 2015년 연말에 각각 규획 이행현황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심사를 진행한다. 평가 및 심사결과를 국무원에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하며, 지방 인민정부의 업적 심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  | **国务院关于印发国家环境保护“十二五”规划的通知** 国发〔2011〕42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现将《国家环境保护“十二五”规划》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国务院 二○一一年十二月十五日  **国家环境保护“十二五”规划**  保护环境是我国的基本国策。为推进“十二五”期间环境保护事业的科学发展，加快资源节约型、环境友好型社会建设，制定本规划。  **一、环境形势**  党中央、国务院高度重视环境保护工作，将其作为贯彻落实科学发展观的重要内容，作为转变经济发展方式的重要手段，作为推进生态文明建设的根本措施。“十一五”期间，国家将主要污染物排放总量显著减少作为经济社会发展的约束性指标，着力解决突出环境问题，在认识、政策、体制和能力等方面取得重要进展。化学需氧量、二氧化硫排放总量比2005年分别下降12.45%、14.29%，超额完成减排任务。污染治理设施快速发展，设市城市污水处理率由2005年的52%提高到72%，火电脱硫装机比重由12%提高到82.6%。让江河湖泊休养生息全面推进，重点流域、区域污染防治不断深化，环境质量有所改善，全国地表水国控断面水质优于Ⅲ类的比重提高到51.9%，全国城市空气二氧化硫平均浓度下降26.3%。环境执法监管力度不断加大，农村环境综合整治成效明显，生态保护切实  加强，核与辐射安全可控，全社会环境意识不断增强，人民群众参与程度进一步提高，“十一五”环境保护目标和重点任务全面完成。  当前，我国环境状况总体恶化的趋势尚未得到根本遏制，环境矛盾凸显，压力继续加大。一些重点流域、海域水污染严重，部分区域和城市大气灰霾现象突出，许多地区主要污染物排放量超过环境容量。农村环境污染加剧，重金属、化学品、持久性有机污染物以及土壤、地下水等污染显现。部分地区生态损害严重，生态系统功能退化，生态环境比较脆弱。核与辐射安全风险增加。人民群众环境诉求不断提高，突发环境事件的数量居高不下，环境问题已成为威胁人体健康、公共安全和社会稳定的重要因素之一。生物多样性保护等全球性环境问题的压力不断加大。环境保护法制尚不完善，投入仍然不足，执法力量薄弱，监管能力相对滞后。同时，随着人口总量持续增长，工业化、城镇化快速推进，能源消费总量不断上升，污染物产生量将继续增加，经济增长的环境约束日趋强化。  **二、指导思想、基本原则和主要目标**  （一）指导思想。  以邓小平理论和“三个代表”重要思想为指导，深入贯彻落实科学发展观，努力提高生态文明水平，切实解决影响科学发展和损害群众健康的突出环境问题，加强体制机制创新和能力建设，深化主要污染物总量减排，努力改善环境质量，防范环境风险，全面推进环境保护历史性转变，积极探索代价小、效益好、排放低、可持续的环境保护新道路，加快建设资源节约型、环境友好型社会。  （二）基本原则。  ——科学发展，强化保护。坚持科学发展，加快转变经济发展方式，以资源环境承载力为基础，在保护中发展，在发展中保护，促进经济社会与资源环境协调发展。  ——环保惠民，促进和谐。坚持以人为本，将喝上干净水、呼吸清洁空气、吃上放心食物等摆上更加突出的战略位置，切实解决关系民生的突出环境问题。逐步实现环境保护基本公共服务均等化，维护人民群众环境权益，促进社会和谐稳定。  ——预防为主，防治结合。坚持从源头预防，把环境保护贯穿于规划、建设、生产、流通、消费各环节，提升可持续发展能力。提高治污设施建设和运行水平，加强生态保护与修复。  ——全面推进，重点突破。坚持将解决全局性、普遍性环境问题与集中力量解决重点流域、区域、行业环境问题相结合，建立与我国国情相适应的环境保护战略体系、全面高效的污染防治体系、健全的环境质量评价体系、完善的环境保护法规政策和科技标准体系、完备的环境管理和执法监督体系、全民参与的社会行动体系。  ——分类指导，分级管理。坚持因地制宜，在不同地区和行业实施有差别的环境政策。鼓励有条件的地区采取更加积极的环境保护措施。健全国家监察、地方监管、单位负责的环境监管体制，落实环境保护目标责任制。  ——政府引导，协力推进。坚持政府引导，明确企业主体责任，加强部门协调配合。加强环境信息公开和舆论监督，动员全社会参与环境保护。探索以市场化手段推进环境保护。  （三）主要目标。  到2015年，主要污染物排放总量显著减少；城乡饮用水水源地环境安全得到有效保障，水质大幅提高；重金属污染得到有效控制，持久性有机污染物、危险化学品、危险废物等污染防治成效明显；城镇环境基础设施建设和运行水平得到提升；生态环境恶化趋势得到扭转；核与辐射安全监管能力明显增强，核与辐射安全水平进一步提高；环境监管体系得到健全。   |  |  |  |  |  | | --- | --- | --- | --- | --- | | **专栏1：“十二五”环境保护主要指标** | | | | | | 序号 | 指 标 | 2010年 | 2015年 | 2015年比2010年增长 | | 1 | 化学需氧量排放总量（万吨） | 2551.7 | 2347.6 | -8% | | 2 | 氨氮排放总量（万吨） | 264.4 | 238.0 | -10% | | 3 | 二氧化硫排放总量（万吨） | 2267.8 | 2086.4 | -8% | | 4 | 氮氧化物排放总量（万吨） | 2273.6 | 2046.2 | -10% | | 5 | 地表水国控断面劣Ⅴ类水质的比例（%） | 17.7 | <15 | -2.7个百分点 | | 七大水系国控断面水质好于Ⅲ类的比例（%） | 55 | >60 | 5个百分点 | | 6 | 地级以上城市空气质量达到二级标准以上的比例（%） | 72 | ≥80 | 8个百分点 |   注：①化学需氧量和氨氮排放总量包括工业、城镇生活和农业源排放总量，依据2010年污染源普查动态更新结  果核定。  ②“十二五”期间，地表水国控断面个数由759个增加到970个，其中七大水系国控断面个数由419个增加到574个；同时，将评价因子由12项增加到21项。据此测算，2010年全国地表水国控断面劣Ⅴ 类水质比例为17.7%，七大水系国控断面好于Ⅲ类水质的比例为55%。  ③“十二五”期间，空气环境质量评价范围由113个重点城市增加到333个全国地级以上城市，按照可吸入颗粒物、二氧化硫、二氧化氮的年均值测算，2010年地级以上城市空气质量达到二级标准以上的比例为72%。  **三、推进主要污染物减排**  （一）加大结构调整力度。  加快淘汰落后产能。严格执行《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部分工业行业淘汰落后生产工艺装备和产品指导目录》。加大钢铁、有色、建材、化工、电力、煤炭、造纸、印染、制革等行业落后产能淘汰力度。制定年度实施方案，将任务分解落实到地方、企业，并向社会公告淘汰落后产能企业名单。建立新建项目与污染减排、淘汰落后产能相衔接的审批机制，落实产能等量或减量置换制度。重点行业新建、扩建项目环境影响审批要将主要污染物排放总量指标作为前置条件。  着力减少新增污染物排放量。合理控制能源消费总量，促进非化石能源发展，到2015年，非化石能源占一次能源消费比重达到11.4%。提高煤炭洗选加工水平。增加天然气、煤层气供给，降低煤炭在一次能源消费中的比重。在大气联防联控重点区域开展煤炭消费总量控制试点。进一步提高高耗能、高排放和产能过剩行业准入门槛。探索建立单位产品污染物产生强度评价制度。积极培育节能环保、新能源等战略性新兴产业，鼓励发展节能环保型交通运输方式。  大力推行清洁生产和发展循环经济。提高造纸、印染、化工、冶金、建材、有色、制革等行业污染物排放标准和清洁生产评价指标，鼓励各地制定更加严格的污染物排放标准。全面推行排污许可证制度。推进农业、工业、建筑、商贸服务等领域清洁生产示范。深化循环经济示范试点，加快资源再生利用产业化，推进生产、流通、消费各环节循环经济发展，构建覆盖全社会的资源循环利用体系。  （二）着力削减化学需氧量和氨氮排放量。  加大重点地区、行业水污染物减排力度。在已富营养化的湖泊水库和东海、渤海等易发生赤潮的沿海地区实施总氮或总磷排放总量控制。在重金属污染综合防治重点区域实施重点重金属污染物排放总量控制。推进造纸、印染和化工等行业化学需氧量和氨氮排放总量控制，削减比例较2010年不低于10%。严格控制长三角、珠三角等区域的造纸、印染、制革、农药、氮肥等行业新建单纯扩大产能项目。禁止在重点流域江河源头新建有色、造纸、印染、化工、制革等项目。  提升城镇污水处理水平。加大污水管网建设力度，推进雨、污分流改造，加快县城和重点建制镇污水处理厂建设，到2015年，全国新增城镇污水管网约16万公里，新增污水日处理能力4200万吨，基本实现所有县和重点建制镇具备污水处理能力，污水处理设施负荷率提高到80%以上，城市污水处理率达到85%。推进污泥无害化处理处置和污水再生利用。加强污水处理设施运行和污染物削减评估考核，推进城市污水处理厂监控平台建设。滇池、巢湖、太湖等重点流域和沿海地区城镇污水处理厂要提高脱氮除磷水平。  推动规模化畜禽养殖污染防治。优化养殖场布局，合理确定养殖规模，改进养殖方式，推行清洁养殖，推进养殖废弃物资源化利用。严格执行畜禽养殖业污染物排放标准，对养殖小区、散养密集区污染物实行统一收集和治理。到2015年，全国规模化畜禽养殖场和养殖小区配套建设固体废物和污水贮存处理设施的比例达到50%以上。  （三）加大二氧化硫和氮氧化物减排力度。  持续推进电力行业污染减排。新建燃煤机组要同步建设脱硫脱硝设施，未安装脱硫设施的现役燃煤机组要加快淘汰或建设脱硫设施，烟气脱硫设施要按照规定取消烟气旁路。加快燃煤机组低氮燃烧技术改造和烟气脱硝设施建设，单机容量30万千瓦以上（含）的燃煤机组要全部加装脱硝设施。加强对脱硫脱硝设施运行的监管，对不能稳定达标排放的，要限期进行改造。  加快其他行业脱硫脱硝步伐。推进钢铁行业二氧化硫排放总量控制，全面实施烧结机烟气脱硫，新建烧结机应配套建设脱硫脱硝设施。加强水泥、石油石化、煤化工等行业二氧化硫和氮氧化物治理。石油石化、有色、建材等行业的工业窑炉要进行脱硫改造。新型干法水泥窑要进行低氮燃烧技术改造，新建水泥生产线要安装效率不低于60%的脱硝设施。因地制宜开展燃煤锅炉烟气治理，新建燃煤锅炉要安装脱硫脱硝设施，现有燃煤锅炉要实施烟气脱硫，东部地区的现有燃煤锅炉还应安装低氮燃烧装置。  开展机动车船氮氧化物控制。实施机动车环境保护标志管理。加速淘汰老旧汽车、机车、船舶，到2015年，基本淘汰2005年以前注册运营的“黄标车”。提高机动车环境准入要求，加强生产一致性检查，禁止不符合排放标准的车辆生产、销售和注册登记。鼓励使用新能源车。全面实施国家第四阶段机动车排放标准，在有条件的地区实施更严格的排放标准。提升车用燃油品质，鼓励使用新型清洁燃料，在全国范围供应符合国家第四阶段标准的车用燃油。积极发展城市公共交通，探索调控特大型和大型城市机动车保有总量。  **四、切实解决突出环境问题**  （一）改善水环境质量。  严格保护饮用水水源地。全面完成城市集中式饮用水水源保护区审批工作，取缔水源保护区内违法建设项目和排污口。推进水源地环境整治、恢复和规范化建设。加强对水源保护区外汇水区有毒有害物质的监管。地级以上城市集中式饮用水水源地要定期开展水质全分析。健全饮用水水源环境信息公开制度，加强风险防范和应急预警。  深化重点流域水污染防治。明确各重点流域的优先控制单元，实行分区控制。淮河流域要突出抓好氨氮控制，重点推进淮河干流及郑州、开封、淮北、淮南、蚌埠、亳州、菏泽、济宁、枣庄、临沂、徐州等城市水污染防治，干流水质基本达到Ⅲ类。海河流域要加强水资源利用与水污染防治统筹，以饮用水安全保障、城市水环境改善和跨界水污染协同治理为重点，大幅减少污染负荷，实现劣Ⅴ类水质断面比重明显下降。辽河流域要加强城市水系环境综合整治，  推进辽河保护区建设，实现辽河干流以及招苏台河、条子河、大辽河等支流水质明显好转。三峡库区及其上游要加强污染治理、水生态保护及水源涵养，确保上游及库区水质保持优良。松花江流域要加强城市水系环境综合整治和面源污染治理，国控断面水质基本消除劣Ⅴ类。黄河中上游要重点推进渭河、汾河、湟水河等支流水污染防治，加强宁东、鄂尔多斯和陕北等能源化工基地的环境风险防控，加强河套灌区农业面源污染防治，实现支流水质大幅改善，干流稳定达到使用功能要求。  太湖流域要着力降低入湖总氮、总磷等污染负荷，湖体水质由劣Ⅴ类提高到Ⅴ类，富营养化趋势得到遏制。巢湖流域要加强养殖和入湖污染控制，削减氨氮、总氮和总磷污染负荷，加强湖区生态修复，遏制湖体富营养化趋势，主要入湖支流基本消除劣Ⅴ类水质。滇池流域要综合推进湖体、生态防护区域、引导利用区域和水源涵养区域的水污染防治，改善入湖河流和湖体水质。南水北调中线丹江口库区及上游要加强水污染防治和水土流失治理，推进农业面源污染治理，实现水质全面达标；东线水源区及沿线要进一步深化污染治理，确保调水水质。  抓好其他流域水污染防治。加大长江中下游、珠江流域污染防治力度，实现水质稳定并有所好转。将西南诸河、西北内陆诸河、东南诸河，鄱阳湖、洞庭湖、洪泽湖、抚仙湖、梁子湖、博斯腾湖、艾比湖、微山湖、青海湖和洱海等作为保障和提升水生态安全的重点地区，探索建立水生态环境质量评价指标体系，开展水生态安全综合评估.  落实水污染防治和水生态安全保障措施。加强湖北省长湖、三湖、白露湖、洪湖和云南省异龙湖等综合治理。加大对黑龙江、乌苏里江、图们江、额尔齐斯河、伊犁河等河流的环境监管和污染防治力度。加大对水质良好或生态脆弱湖泊的保护力度。  综合防控海洋环境污染和生态破坏。坚持陆海统筹、河海兼顾，推进渤海等重点海域综合治理。落实重点海域排污总量控制制度。加强近岸海域与流域污染防治的衔接。加强对海岸工程、海洋工程、海洋倾废和船舶污染的环境监管，在生态敏感地区严格控制围填海活动。降低海水养殖污染物排放强度。  加强海岸防护林建设，保护和恢复滨海湿地、红树林、珊瑚礁等典型海洋生态系统。加强海洋生物多样性保护。在重点海域逐步增加生物、赤潮和溢油监测项目，强化海上溢油等事故应急处置。建立海洋环境监测数据共享机制。到2015年，近岸海域水质总体保持稳定，长江、黄河、珠江等河口和渤海等重点海湾的水质有所改善。  推进地下水污染防控。开展地下水污染状况调查和评估，划定地下水污染治理区、防控区和一般保护区。加强重点行业地下水环境监管。取缔渗井、渗坑等地下水污染源,切断废弃钻井、矿井等污染途径。防范地下工程设施、地下勘探、采矿活动污染地下水。控制危险废物、城镇污染、农业面源污染对地下水的影响。严格防控污染土壤和污水灌溉对地下水的污染。在地下水污染突出区域进行修复试点，重点加强华北地区地下水污染防治。开展海水入侵综合防治示范。  （二）实施多种大气污染物综合控制。  深化颗粒物污染控制。加强工业烟粉尘控制，推进燃煤电厂、水泥厂除尘设施改造，钢铁行业现役烧结（球团）设备要全部采用高效除尘器，加强工艺过程除尘设施建设。20蒸吨（含）以上的燃煤锅炉要安装高效除尘器，鼓励其他中小型燃煤工业锅炉使用低灰分煤或清洁能源。加强施工工地、渣土运输及道路等扬尘控制。  加强挥发性有机污染物和有毒废气控制。加强石化行业生产、输送和存储过程挥发性有机污染物排放控制。鼓励使用水性、低毒或低挥发性的有机溶剂，推进精细化工行业有机废气污染治理，加强有机废气回收利用。实施加油站、油库和油罐车的油气回收综合治理工程。开展挥发性有机污染物和有毒废气监测，完善重点行业污染物排放标准。严格污染源监管，减少含汞、铅和二口恶英等有毒有害废气排放。  推进城市大气污染防治。在大气污染联防联控重点区域，建立区域空气环境质量评价体系，开展多种污染物协同控制，实施区域大气污染物特别排放限值，对火电、钢铁、有色、石化、建材、化工等行业进行重点防控。在京津冀、长三角和珠三角等区域开展臭氧、细颗粒物（PM2.5）等污染物监测，开展区域联合执法检查，到2015年，上述区域复合型大气污染得到控制，所有城市空气环境质量达到或好于国家二级标准，酸雨、灰霾和光化学烟雾污染明显减少。实施城市清洁空气行动，加强乌鲁木齐等城市大气污染防治。实行城市空气质量分级管理，尚未达到标准的城市要制定并实施达标方案。加强餐饮油烟污染控制和恶臭污染治理。  加强城乡声环境质量管理。加大交通、施工、工业、社会生活等领域噪声污染防治力度。划定或调整声环境功能区，强化城市声环境达标管理，扩大达标功能区面积。做好重点噪声源控制，解决噪声扰民问题。强化噪声监管能力建设。  （三）加强土壤环境保护。  加强土壤环境保护制度建设。完善土壤环境质量标准，制定农产品产地土壤环境保护监督管理办法和技术规范。研究建立建设项目用地土壤环境质量评估与备案制度及污染土壤调查、评估和修复制度，明确治理、修复的责任主体和要求。  强化土壤环境监管。深化土壤环境调查，对粮食、蔬菜基地等敏感区和矿产资源开发影响区进行重点调查。开展农产品产地土壤污染评估与安全等级划分试点。加强城市和工矿企业污染场地环境监管，开展污染场地再利用的环境风险评估，将场地环境风险评估纳入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禁止未经评估和无害化治理的污染场地进行土地流转和开发利用。经评估认定对人体健康有严重影响的污染场地，应采取措施防止污染扩散，且不得用于住宅开发，对已有居民要实施搬迁。  推进重点地区污染场地和土壤修复。以大中城市周边、重污染工矿企业、集中治污设施周边、重金属污染防治重点区域、饮用水水源地周边、废弃物堆存场地等典型污染场地和受污染农田为重点，开展污染场地、土壤污染治理与修复试点示范。对责任主体灭失等历史遗留场地土壤污染要加大治理修复的投入力度。  （四）强化生态保护和监管。  强化生态功能区保护和建设。加强大小兴安岭森林、长白山森林等25个国家重点生态功能区的保护和管理，制定管理办法，完善管理机制。加强生态环境监测与评估体系建设，开展生态系统结构和功能的连续监测和定期评估。实施生态保护和修复工程。严格控制重点生态功能区污染物排放总量和产业准入环境标准。  提升自然保护区建设与监管水平。开展自然保护区基础调查与评估，统筹完善全国自然保护区发展规划。加强自然保护区建设和管理，严格控制自然保护区范围和功能分区的调整，严格限制涉及自然保护区的开发建设活动，规范自然保护区内土地和海域管理。加强国家级自然保护区规范化建设。优化自然保护区空间结构和布局，重点加强西南高山峡谷区、中南西部山地丘陵区、近岸海域等区域和河流水生生态系统自然保护区建设力度。抢救性保护中东部地区人类活动稠密区域残存的自然生境。到2015年，陆地自然保护区面积占国土面积的比重稳定在15%。  加强生物多样性保护。继续实施《中国生物多样性保护战略与行动计划（2011-2030年）》，加大生物多样性保护优先区域的保护力度，完成8至10个优先区域生物多样性本底调查与评估。开展生物多样性监测试点以及生物多样性保护示范区、恢复示范区等建设。推动重点地区和行业的种质资源库建设。加强生物物种资源出入境监管。研究建立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共享制度。研究制定防止外来物种入侵和加强转基因生物安全管理的法规。强化对转基因生物体环境释放和环境改善用途微生物利用的监管，开展外来有害物种防治。发布受威胁动植物和外来入侵物种名录。到2015年，90%的国家重点保护物种和典型生态系统得到保护。  推进资源开发生态环境监管。落实生态功能区划，规范资源开发利用活动。加强矿产、水电、旅游资源开发和交通基础设施建设中的生态监管，落实相关企业在生态保护与恢复中的责任。实施矿山环境治理和生态恢复保证金制度。  **五、加强重点领域环境风险防控**  （一）推进环境风险全过程管理。  开展环境风险调查与评估。以排放重金属、危险废物、持久性有机污染物和生产使用危险化学品的企业为重点，全面调查重点环境风险源和环境敏感点，建立环境风险源数据库。研究环境风险的产生、传播、防控机制。开展环境污染与健康损害调查,建立环境与健康风险评估体系。  完善环境风险管理措施。完善以预防为主的环境风险管理制度，落实企业主体责任。制定环境风险评估规范，完善相关技术政策、标准、工程建设规范。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审批要对防范环境风险提出明确要求。建立企业突发环境事件报告与应急处理制度、特征污染物监测报告制度。对重点风险源、重要和敏感区域定期进行专项检查，对高风险企业要予以挂牌督办、限期整改或搬迁，对不具备整改条件的，应依法予以关停。建立环境应急救援网络，完善环境应急预案，定期开展环境事故应急演练。完善突发环境事件应急救援体系，构建政府引导、部门协调、分级负责、社会参与的环境应急救援机制，依法科学妥善处置突发环境事件。  建立环境事故处置和损害赔偿恢复机制。将有效防范和妥善应对重大突发环境事件作为地方人民政府的重要任务，纳入环境保护目标责任制。推进环境污染损害鉴定评估机构建设，建立鉴定评估工作机制，完善损害赔偿制度。建立损害评估、损害赔偿以及损害修复技术体系。健全环境污染责任保险制度，研究建立重金属排放等高环境风险企业强制保险制度。  （二）加强核与辐射安全管理。  提高核能与核技术利用安全水平。加强重大自然灾害对核设施影响的分析和预测预警。进一步提高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运行的可靠性。加强研究堆和核燃料循环设施的安全整改，对不能满足安全要求的设施要限制运行或逐步关停。规范核技术利用行为，开展核技术利用单位综合安全检查，对安全隐患大的核技术利用项目实施强制退役。  加强核与辐射安全监管。完善核与辐射安全审评方法。加强运行核设施安全监管，强化对在建、拟建核设施的安全分析和评估，完善核安全许可证制度。完善早期核设施的安全管理。加强对核材料、放射性物品生产、运输、存储等环节的安全监管。加强核技术利用安全监管，完善核技术利用辐射安全管理信息系统。加强辐射环境质量监测和核设施流出物监督性监测。完善核与辐射安全监管国际合作机制，加强核安全宣传和科普教育。  加强放射性污染防治。推进早期核设施退役和放射性污染治理。开展民用辐射照射装置退役和废源回收工作。加快放射性废物贮存、处理和处置能力建设，基本消除历史遗留中低放废液的安全风险。加快铀矿、伴生放射性矿污染治理，关停不符合安全要求的铀矿冶设施，建立铀矿冶退役治理工程长期监护机制。  （三）遏制重金属污染事件高发态势。  加强重点行业和区域重金属污染防治。以有色金属矿（含伴生矿）采选业、有色金属冶炼业、铅蓄电池制造业、皮革及其制品业、化学原料及化学制品制造业等行业为重点，加大防控力度，加快重金属相关企业落后产能淘汰步伐。合理调整重金属相关企业布局，逐步提高行业准入门槛，严格落实卫生防护距离。坚持新增产能与淘汰产能等量置换或减量置换，禁止在重点区域新改扩建增加重金属污染物排放量的项目。  鼓励各省（区、市）在其非重点区域内探索重金属排放量置换、交易试点。制定并实施重点区域、行业重金属污染物特别排放限值。加强湘江等流域、区域重金属污染综合治理。到2015年，重点区域内重点重金属污染物排放量比2007年降低15%，非重点区域重点重金属污染物排放量不超过2007年水平。  实施重金属污染源综合防治。将重金属相关企业作为重点污染源进行管理，建立重金属污染物产生、排放台账，强化监督性监测和检查制度。对重点企业每两年进行一次强制清洁生产审核。推动重金属相关产业技术进步，鼓励企业开展深度处理。鼓励铅蓄电池制造业、有色金属冶炼业、皮革及其制品业、电镀等行业实施同类整合、园区化管理，强化园区的环境保护要求。健全重金属污染健康危害监测与诊疗体系。  （四）推进固体废物安全处理处置。  加强危险废物污染防治。落实危险废物全过程管理制度，确定重点监管的危险废物产生单位清单，加强危险废物产生单位和经营单位规范化管理，杜绝危险废物非法转移。对企业自建的利用处置设施进行排查、评估，促进危险废物利用和处置产业化、专业化和规模化发展。控制危险废物填埋量。取缔废弃铅酸蓄电池非法加工利用设施。规范实验室等非工业源危险废物管理。加快推进历史堆存铬渣的安全处置，确保新增铬渣得到无害化利用处置。加强医疗废物全过程管理和无害化处置设施建设，因地制宜推进农村、乡镇和偏远地区医疗废物无害化管理，到2015年，基本实现地级以上城市医疗废物得到无害化处置。  加大工业固体废物污染防治力度。完善鼓励工业固体废物利用和处置的优惠政策，强化工业固体废物综合利用和处置技术开发，加强煤矸石、粉煤灰、工业副产石膏、冶炼和化工废渣等大宗工业固体废物的污染防治，到2015年，工业固体废物综合利用率达到72%。推行生产者责任延伸制度，规范废弃电器电子产品的回收处理活动，建设废旧物品回收体系和集中加工处理园区，推进资源综合利用。加强进口废物圈区管理。  提高生活垃圾处理水平。加快城镇生活垃圾处理设施建设，到2015年，全国城市生活垃圾无害化处理率达到80%，所有县具有生活垃圾无害化处理能力。健全生活垃圾分类回收制度，完善分类回收、密闭运输、集中处理体系，加强设施运行监管。对垃圾简易处理或堆放设施和场所进行整治，对已封场的垃圾填埋场和旧垃圾场要进行生态修复、改造。鼓励垃圾厌氧制气、焚烧发电和供热、填埋气发电、餐厨废弃物资源化利用。推进垃圾渗滤液和垃圾焚烧飞灰处置工程建设。开展工业生产过程协同处理生活垃圾和污泥试点。  （五）健全化学品环境风险防控体系。  严格化学品环境监管。完善危险化学品环境管理登记及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制度。制定有毒有害化学品淘汰清单，依法淘汰高毒、难降解、高环境危害的化学品。制定重点环境管理化学品清单，限制生产和使用高环境风险化学品。完善相关行业准入标准、环境质量标准、排放标准和监测技术规范，推行排放、转移报告制度，开展强制清洁生产审核。健全化学品环境管理机构。建立化学品环境污染责任终身追究制和全过程行政问责制。  加强化学品风险防控。加强化工园区环境管理，严格新建化工园区的环境影响评价审批，加强现有化工企业集中区的升级改造。新建涉及危险化学品的项目应进入化工园区或化工聚集区，现有化工园区外的企业应逐步搬迁入园。制定化工园区环境保护设施建设标准，完善园区相关设施和环境应急体系建设。加强重点环境管理类危险化学品废弃物和污染场地的管理与处置。推进危险化学品企业废弃危险化学品暂存库建设和处理处置能力建设。以铁矿石烧结、电弧炉炼钢、再生有色金属生产、废弃物焚烧等行业为重点，加强二口恶英污染防治，建立完善的二口恶英污染防治体系和长效监管机制；到2015年，重点行业二口恶英排放强度降低10%。  **六、完善环境保护基本公共服务体系**  （一）推进环境保护基本公共服务均等化。  制定国家环境功能区划。根据不同地区主要环境功能差异，以维护环境健康、保育自然生态安全、保障食品产地环境安全等为目标，结合全国主体功能区规划，编制国家环境功能区划，在重点生态功能区、陆地和海洋生态环境敏感区、脆弱区等区域划定“生态红线”，制定不同区域的环境目标、政策和环境标准，实行分类指导、分区管理。  加大对优化开发和重点开发地区的环境治理力度，结合环境容量实施严格的污染物排放标准，大幅度削减污染物排放总量，加强环境风险防范，保护和扩大生态空间。加强对农产品主产区的环境监管，加强土壤侵蚀和养殖污染防治。对自然文化资源保护区依法实施强制性保护，维护自然生态和文化遗产的原真性、完整性，依法关闭或迁出污染企业，实现污染物“零排放”。严格能源基地和矿产资源基地等区域环境准入，引导自然资源合理有序开发。  实施区域环境保护战略。西部地区要坚持生态优先，加强水能、矿产等资源能源开发活动的环境监管，保护和提高其生态服务功能，构筑国家生态安全屏障。三江源地区要深入推进生态保护综合试验区建设。塔里木河流域要加强生态治理和荒漠化防治。呼包鄂榆、关中-天水、兰州-西宁、宁夏沿黄、天山北坡等区域要严格限制高耗水行业发展，提高水资源利用水平，控制采暖期煤烟型大气污染。成渝、黔中、滇中、藏中南等区域要强化酸雨污染防治，加强石漠化治理和高原湖泊保护。  东北地区要加强森林等生态系统保护，开展三江平原、松嫩平原湿地修复，强化黑土地水土流失和荒漠化综合治理，加强东北平原农产品产地土壤环境保护。辽中南、长吉图、哈大齐和牡绥等区域要加强采暖期城市大气污染治理，推进松花江、辽河流域和近岸海域污染防治，加强采煤沉陷区综合治理和矿山环境修复，强化对石油等资源开发活动的生态环境监管。  中部地区要有效维护区域资源环境承载能力，提高城乡环境基础设施建设水平，维持环境质量总体稳定。太原城市群、中原经济区要加强区域大气污染治理合作，严格限制高耗水行业发展，加强采煤沉陷区的生态恢复。武汉城市圈、环长株潭城市群、皖江城市带等区域要把区域资源承载力和生态环境容量作为承接产业转移的重要依据，严格资源节约和环保准入门槛，统筹城乡环境保护，加快推进资源节约型、环境友好型社会建设。加强鄱阳湖生态经济区生态环境保护。  东部地区要大幅度削减污染物排放总量，加快推进经济发展方式转变，化解资源环境瓶颈制约。京津冀、长三角、珠三角等区域要加快环境管理体制机制创新，有效控制区域性复合型大气污染。河北沿海、江苏沿海、浙江舟山群岛新区、海峡西岸、山东半岛等区域要进一步提高资源能源利用效率，保护海岸带和生物多样性。加快推进海南国际旅游岛环境基础设施建设。  推进区域环境保护基本公共服务均等化。合理确定环境保护基本公共服务的范围和标准，加强城乡和区域统筹，健全环境保护基本公共服务体系。中央财政通过一般性转移支付和生态补偿等措施，加大对西部地区、禁止开发区域和限制开发区域、特殊困难地区的支持力度，提高环境保护基本公共服务供给水平。地方各级人民政府要保障环境保护基本公共服务支出，加强基层环境监管能力建设。  （二）提高农村环境保护工作水平。  保障农村饮用水安全。开展农村饮用水水源地调查评估，推进农村饮用水水源保护区或保护范围的划定工作。强化饮用水水源环境综合整治。建立和完善农村饮用水水源地环境监管体系，加大执法检查力度。开展环境保护宣传教育，提高农村居民水源保护意识。在有条件的地区推行城乡供水一体化。  提高农村生活污水和垃圾处理水平。鼓励乡镇和规模较大村庄建设集中式污水处理设施，将城市周边村镇的污水纳入城市污水收集管网统一处理，居住分散的村庄要推进分散式、低成本、易维护的污水处理设施建设。加强农村生活垃圾的收集、转运、处置设施建设，统筹建设城市和县城周边的村镇无害化处理设施和收运系统；交通不便的地区要探索就地处理模式，引导农村生活垃圾实现源头分类、就地减量、资源化利用。  提高农村种植、养殖业污染防治水平。引导农民使用生物农药或高效、低毒、低残留农药，农药包装应进行无害化处理。大力推进测土配方施肥。推动生态农业和有机农业发展。加强废弃农膜、秸秆等农业生产废弃物资源化利用。开展水产养殖污染调查，减少太湖、巢湖、洪泽湖等湖泊的水产养殖面积和投饵数量。  改善重点区域农村环境质量。实行农村环境综合整治目标责任制，实施农村清洁工程，开发推广适用的综合整治模式与技术，着力解决环境污染问题突出的村庄和集镇，到2015年，完成6万个建制村的环境综合整治任务。优化农村地区工业发展布局，严格工业项目环境准入，防止城市和工业污染向农村转移。对农村地区化工、电镀等企业搬迁和关停后的遗留污染要进行综合治理。  （三）加强环境监管体系建设。  以基础、保障、人才等工程为重点，推进环境监管基本公共服务均等化建设，到2015年，基本形成污染源与总量减排监管体系、环境质量监测与评估考核体系、环境预警与应急体系，初步建成环境监管基本公共服务体系。  完善污染减排统计、监测、考核体系。加强污染源自动监控系统建设、监督管理和运行维护。加强农村和机动车减排监管能力建设。全面推进监测、监察、宣教、统计、信息等环境保护能力标准化建设，大幅提升市县环境基础监管能力。在京津冀、长三角、珠三角等经济发达地区和重污染地区，以及其他有条件的地区，将环境监察队伍向乡镇、街道延伸。以中西部地区县级和部分地市级监测监察机构为重点，推进基层环境监测执法业务用房建设。开展农业和农村环境统计。开展面源污染物排放总量控制研究，探索建立面源污染减排核证体系。  推进环境质量监测与评估考核体系建设。优化国家环境监测断面（点位），建设环境质量评价、考核与预警网络。在重点地区建设环境监测国家站点，提升国家监测网自动监测水平。提升区域特征污染物监测能力，开展重金属、挥发性有机物等典型环境问题特征污染因子排放源的监测，鼓励将特征污染物监测纳入地方日常监测范围。开展农村饮用水源地、村庄河流（水库）水质监测试点，推进典型农村地区空气背景站或区域站建设，加强流动监测能力建设，提高农村地区环境监测覆盖率，启动农村环境质量调查评估。开展生物监测。推进环境专用卫星建设及其应用，建立卫星遥感监测和地面监测相结合的国家生态环境监测网络，开展生态环境质量监测与评估。建设全国辐射环境监测网络。  加强环境预警与应急体系建设。加快国家、省、市三级自动监控系统建设，建立预警监测系统。提高环境信息的基础、统计和业务应用能力，建设环境信息资源中心。利用物联网和电子标识等手段，对危险化学品等存储、运输等环节实施全过程监控。强化环境应急能力标准化建设。加强重点流域、区域环境应急与监管机构建设。健全核与辐射环境监测体系，建立重要核设施的监督性监测系统和其他核设施的流出物实时在线监测系统，推动国家核与辐射安全监督技术研发基地、重点实验室、业务用房建设。加强核与辐射事故应急响应、反恐能力建设，完善应急决策、指挥调度系统及应急物资储备。  提高环境监管基本公共服务保障能力。建立经费保障渠道和机制，按照运行经费定额标准及更新机制，保障国家与地方环境监管网络运行、设备更新及业务用房维修改造。加强队伍建设，提升人员素质。研究建立核与辐射安全监管及核安全重要岗位人员技术资质管理制度。完善培训机制，加强市、县两级特别是中西部地区环境监管人员培训。培养引进高端人才。定期开展环境专业技能竞赛。  **七、实施重大环保工程**  为把“十二五”环境保护目标和任务落到实处，要积极实施各项环境保护工程（全社会环保投资需求约3.4万亿元），其中，优先实施8项环境保护重点工程，开展一批环境基础调查与试点示范，投资需求约1.5万亿元。要充分利用市场机制，形成多元化的投入格局，确保工程投资到位。工程投入以企业和地方各级人民政府为主，中央政府区别不同情况给予支持。要定期开展工程项目绩效评价，提高投资效益。   |  | | --- | | 专栏2：“十二五”环境保护重点工程 | | 主要污染物减排工程。包括城镇生活污水处理设施及配套管网、污泥处理处置、工业水污染防治、畜禽养殖污染防治等水污染物减排工程，电力行业脱硫脱硝、钢铁烧结机脱硫脱硝、其他非电力重点行业脱硫、水泥行业与工业锅炉脱硝等大气污染物减排工程。  改善民生环境保障工程。包括重点流域水污染防治及水生态修复、地下水污染防治、重点区域大气污染联防联控、受污染场地和土壤污染治理与修复等工程。  农村环保惠民工程。包括农村环境综合整治、农业面源污染防治等工程。  生态环境保护工程。包括重点生态功能区和自然保护区建设、生物多样性保护等工程。  重点领域环境风险防范工程。包括重金属污染防治、持久性有机污染物和危险化学品污染防治、危险废物和医疗废物无害化处置等工程。  核与辐射安全保障工程。包括核安全与放射性污染防治法规标准体系建设、核与辐射安全监管技术研发基地建设以及辐射环境监测、执法能力建设、人才培养等工程。  环境基础设施公共服务工程。包括城镇生活污染、危险废物处理处置设施建设，城乡饮用水水源地安全保障等工程。  环境监管能力基础保障及人才队伍建设工程。包括环境监测、监察、预警、应急和评估能力建设，污染源在线自动监控设施建设与运行，人才、宣教、信息、科技和基础调查等工程建设，建立健全省市县三级环境监管体系。 |   **八、完善政策措施**  （一）落实环境目标责任制。  制定生态文明建设指标体系，纳入地方各级人民政府政绩考核。实行环境保护一票否决制。继续推进主要污染物总量减排考核，探索开展环境质量监督考核。落实环境目标责任制，定期发布主要污染物减排、环境质量、重点流域污染防治规划实施情况等考核结果，对未完成环保目标任务或对发生重特大突发环境事件负有责任的地方政府要进行约谈，实施区域限批，并追究有关领导责任。  （二）完善综合决策机制。  完善政府负责、环保部门统一监督管理、有关部门协调配合、全社会共同参与的环境管理体系。充分发挥环境保护部际联席会议的作用，促进部门间协同联动与信息共享。把主要污染物总量控制要求、环境容量、环境功能区划和环境风险评估等作为区域和产业发展的决策依据。依法对重点流域、区域开发和行业发展规划以及建设项目开展环境影响评价。健全规划环境影响评价和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的联动机制。完善建设项目环境保护验收制度。加强对环境影响评价审查的监督管理。对环境保护重点城市的城市总体规划进行环境影响评估，探索编制城市环境保护总体规划。 （三）加强法规体系建设。  加强环境保护法、大气污染防治法、清洁生产促进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环境噪声污染防治法、环境影响评价法等法律修订的基础研究工作，研究拟订污染物总量控制、饮用水水源保护、土壤环境保护、排污许可证管理、畜禽养殖污染防治、机动车污染防治、有毒有害化学品管理、核安全与放射性污染防治、环境污染损害赔偿等法律法规。  统筹开展环境质量标准、污染物排放标准、核电标准、民用核安全设备标准、环境监测规范、环境基础标准制修订规范、管理规范类环境保护标准等制（修）订工作。完善大气、水、海洋、土壤等环境质量标准，完善污染物排放标准中常规污染物和有毒有害污染物排放控制要求，加强水污染物间接排放控制和企业周围环境质量监控要求。推进环境风险源识别、环境风险评估和突发环境事件应急环境保护标准建设。鼓励地方制订并实施地方污染物排放标准。  （四）完善环境经济政策。  落实燃煤电厂烟气脱硫电价政策，研究制定脱硝电价政策，对污水处理、污泥无害化处理设施、非电力行业脱硫脱硝和垃圾处理设施等企业实行政策优惠。对非居民用水要逐步实行超额累进加价制度，对高耗水行业实行差别水价政策。研究鼓励企业废水“零排放”的政策措施。健全排污权有偿取得和使用制度，发展排污权交易市场。  推进环境税费改革，完善排污收费制度。全面落实污染者付费原则，完善污水处理收费制度，收费标准要逐步满足污水处理设施稳定运行和污泥无害化处置需求。改革垃圾处理费征收方式，加大征收力度，适度提高垃圾处理收费标准和财政补贴水平。  建立企业环境行为信用评价制度，加大对符合环保要求和信贷原则企业和项目的信贷支持。建立银行绿色评级制度，将绿色信贷成效与银行工作人员履职评价、机构准入、业务发展相挂钩。推行政府绿色采购，逐步提高环保产品比重，研究推行环保服务政府采购。制定和完善环境保护综合名录。  探索建立国家生态补偿专项资金。研究制定实施生态补偿条例。建立流域、重点生态功能区等生态补偿机制。推行资源型企业可持续发展准备金制度。  （五）加强科技支撑。  提升环境科技基础研究和应用能力。夯实环境基准、标准制订的科学基础，完善环境调查评估、监测预警、风险防范等环境管理技术体系。推进国家环境保护重点实验室、工程技术中心、野外观测研究站等建设。组织实施好水体污染控制与治理等国家科技重大专项，大力研发污染控制、生态保护和环境风险防范的高新技术、关键技术、共性技术。研发氮氧化物、重金属、持久性有机污染物、危险化学品等控制技术和适合我国国情的土壤修复、农业面源污染治理等技术。大力推动脱硫脱硝一体化、除磷脱氮一体化以及脱除重金属等综合控制技术研发。强化先进技术示范与推广。  （六）发展环保产业。  围绕重点工程需求，强化政策驱动，大力推动以污水处理、垃圾处理、脱硫脱硝、土壤修复和环境监测为重点的装备制造业发展，研发和示范一批新型环保材料、药剂和环境友好型产品。推动跨行业、跨企业循环利用联合体建设。实行环保设施运营资质许可制度，推进烟气脱硫脱硝、城镇污水垃圾处理、危险废物处理处置等污染设施建设和运营的专业化、社会化、市场化进程，推行烟气脱硫设施特许经营。制定环保产业统计标准。研究制定提升工程投融资、设计和建设、设施运营和维护、技术咨询、清洁生产审核、产品认证和人才培训等环境服务业水平的政策措施。  （七）加大投入力度。  把环境保护列入各级财政年度预算并逐步增加投入。适时增加同级环境保护能力建设经费安排。加大对中西部地区环境保护的支持力度。围绕推进环境基本公共服务均等化和改善环境质量状况，完善一般性转移支付制度，加大对国家重点生态功能区、中西部地区和民族自治地方环境保护的转移支付力度。深化“以奖促防”、“以奖促治”、“以奖代补”等政策，强化各级财政资金的引导作用。  推进环境金融产品创新，完善市场化融资机制。探索排污权抵押融资模式。推动建立财政投入与银行贷款、社会资金的组合使用模式。鼓励符合条件的地方融资平台公司以直接、间接的融资方式拓宽环境保护投融资渠道。支持符合条件的环保企业发行债券或改制上市，鼓励符合条件的环保上市公司实施再融资。探索发展环保设备设施的融资租赁业务。鼓励多渠道建立环保产业发展基金。引导各类创业投资企业、股权投资企业、社会捐赠资金和国际援助资金增加对环境保护领域的投入。  （八）严格执法监管。  完善环境监察体制机制，明确执法责任和程序，提高执法效率。建立跨行政区环境执法合作机制和部门联动执法机制。深入开展整治违法排污企业保障群众健康环保专项行动，改进对环境违法行为的处罚方式，加大执法力度。持续开展环境安全监察，消除环境安全隐患。强化承接产业转移环境监管。深化流域、区域、行业限批和挂牌督办等督查制度。开展环境法律法规执行和环境问题整改情况后督察，健全重大环境事件和污染事故责任追究制度。鼓励设立环境保护法庭。  （九）发挥地方人民政府积极性。  进一步深化环境保护激励措施，充分发挥地方人民政府预防和治理环境污染的积极性。进一步完善领导干部政绩综合评价体系，引导地方各级人民政府把环境保护放在全局工作的突出位置，及时研究解决本地区环境保护重大问题。完善中央环境保护投入管理机制，带动地方人民政府加大投入力度。推进生态文明建设试点，鼓励开展环境保护模范城市、生态示范区等创建活动。  （十）部门协同推进环境保护。  环境保护部门要加强环境保护的指导、协调、监督和综合管理。发展改革、财政等综合部门要制定有利于环境保护的财税、产业、价格和投资政策。科技部门要加强对控制污染物排放、改善环境质量等关键技术的研发与示范支持。工业部门要加大企业技术改造力度，严格行业准入，完善落后产能退出机制，加强工业污染防治。国土资源部门要控制生态用地的开发，加强矿产资源开发的环境治理恢复，保障环境保护重点工程建设用地。住房城乡建设部门要加强城乡污水、垃圾处理设施的建设和运营管理。交通运输、铁道等部门要加强公路、铁路、港口、航道建设与运输中的生态环境保护。水利部门要优化水资源利用和调配，统筹协调生活、生产经营和生态环境用水，严格入河排污口管理，加强水资源管理和保护，强化水土流失治理。农业部门要加强对科学施用肥料、农药的指导和引导，加强畜禽养殖污染防治、农业节水、农业物种资源、水生生物资源、渔业水域和草地生态保护，加强外来物种管理。商务部门要严格宾馆、饭店污染控制，推动开展绿色贸易，应对贸易环境壁垒。卫生部门要积极推进环境与健康相关工作，加大重金属诊疗系统建设力度。海关部门要加强废物进出境监管，加大对走私废物等危害环境安全行为的查处力度，阻断危险废物非法跨境转移。林业部门要加强林业生态建设力度。旅游部门要合理开发旅游资源，加强旅游区的环境保护。能源部门要合理调控能源消费总量，实施能源结构战略调整，提高能源利用效率。气象部门要加强大气污染防治和水环境综合治理气象监测预警服务以及核安全与放射性污染气象应急响应服务。海洋部门要加强海洋生态保护，推进海洋保护区建设，强化对海洋工程、海洋倾废等的环境监管。  （十一）积极引导全民参与。  实施全民环境教育行动计划，动员全社会参与环境保护。推进绿色创建活动，倡导绿色生产、生活方式。完善新闻发布和重大环境信息披露制度。推进城镇环境质量、重点污染源、重点城市饮用水水质、企业环境和核电厂安全信息公开，建立涉及有毒有害物质排放企业的环境信息强制披露制度。引导企业进一步增强社会责任感。建立健全环境保护举报制度，畅通环境信访、12369环保热线、网络邮箱等信访投诉渠道，鼓励实行有奖举报。支持环境公益诉讼。  （十二）加强国际环境合作。  加强与其他国家、国际组织的环境合作，积极引进国外先进的环境保护理念、管理模式、污染治理技术和资金，宣传我国环境保护政策和进展。大力推进国际环境公约、核安全和放射性废物管理安全等公约的履约工作，完善国内协调机制，加大中央财政对履约工作的投入力度，探索国际资源与其他渠道资金相结合的履约资金保障机制。  积极参与环境与贸易相关谈判和相关规则的制定，加强环境与贸易的协调，维护我国环境权益。研究调整“高污染、高环境风险”产品的进出口关税政策，遏制高耗能、高排放产品出口。全面加强进出口贸易环境监管，禁止不符合环境保护标准的产品、技术、设施等引进，大力推动绿色贸易。  **九、加强组织领导和评估考核**  地方人民政府是规划实施的责任主体，要把规划目标、任务、措施和重点工程纳入本地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总体规划，把规划执行情况作为地方政府领导干部综合考核评价的重要内容。国务院各有关部门要各司其责，密切配合，完善体制机制，加大资金投入，推进规划实施。要在2013年年底和2015年年底，分别对规划执行情况进行中期评估和终期考核，评估和考核结果向国务院报告，向社会公布，并作为对地方人民政府政绩考核的重要内容。 |